

산학협력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해설서

2025. 6.



Contents

I.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개요	7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위 업무	8
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 관련 법규	13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 관련 특징	17
II.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지침 조문별 해설	19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	20
III.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43
1. 재무상태표의 개요	44
2. 자산	44
3. 부채	54
4. 자본	61
IV.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67
1. 포괄손익계산서 개요	68
2. 수익 및 비용 인식기준	72
3. 사업수익	73
4. 사업비용	73
5. 사업외손익	74
V. 자본변동표	77
1. 의의	78
2. 기본구조	79
3. 자본변동표 양식 예시	80
4. 주식 공시	81

VI. 현금흐름표	83
1. 의의.....	84
2. 작성원칙.....	85
3. 현금흐름표의 표시 및 보고.....	85
4. 현금흐름표 양식 예시.....	86
VII. 결산 실무	91
1. 법인세의 계산.....	92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00
3. 법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108
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111
5. 지분법 회계처리.....	116
VIII. 재무성과지표	125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건전성.....	126
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수익성.....	127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과성.....	127
IX. 부록	129
참고문헌	147

표 목차

<표 1-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장기수익모델	8
<표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사업화 투자모델 및 투자회수 수익모델	9
<표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J/V설립모델과 투자모델	10
<표 1-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관리	11
<표 1-5> 국내외 투자주체별 투자회수 수익모델 비교 분석	12
<표 1-6>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의 연계	13
<표 1-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유관기관의 회계처리규칙 비교	15
<표 1-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준용사항	17
<표 3-1>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 명세표	45
<표 3-2>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과목명세표	54
<표 3-3>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교	59
<표 3-4> 재무상태표 자본 계정과목명세표	61
<표 3-5> 이익잉여금	65
<표 4-1>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68
<표 5-1> 자본변동표	80
<표 6-1> 현금흐름표	87
<표 7-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92
<표 7-2> 법인세 계산	92
<표 7-3> 법인세율	110
<표 7-4> 일반기업과 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 비교	115
<표 7-5> 투자주식 보유에 따른 회계이슈	116
<표 7-6> 자회사 지분변동액의 반영	121

그림 목차

[그림 1-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단계별 투자회수 전략.....	11
[그림 7-1] 세무조정.....	9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I

산학협력력기술지주회사의 회계 개요

0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위 업무

가. 창업형 기술사업화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사업화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창업형 기술사업화(Foundation&T&BD Incubation)를 통해 대학 기보유 기술 단독 또는 외부기술과의 패키지를 통한 기술혁신형기업(자회사)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투자·자본 수익 획득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사업화, 투자촉진 사업을 실행함
- 기술현물출자 및 투자를 통한 기술사업화 이외에도 지식재산관리, 기술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 등을 부수적 사업으로 영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기반)
 - P&D 기술투자(Purchase&Development Investment) : 사업화 유망기술을 획득, 기술 융복합 및 Post 기술개발투자를 통하여 기술가치 제고 후, 기술매각을 통한 투자수익 획득
 - 기술·사업아이디어 뱅크(Technology&Business Idea Bank) :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전환 등을 위한 맞춤형 기술,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 수익 획득
 - 비즈니스 컨설팅 (Business Consulting)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자금,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관한 컨설팅 제공을 통한 수익 획득
 - 미성숙단계 M&A중개 (Pre-mature M&A 중개) :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소기업, 프리보드 수준의 벤처기업간 M&A 및 대기업으로 Spin-in 중개를 통한 중개수익 획득
 - 테크펀드 등의 운용(Tech Fund Operation) : 신약후보물질 등 Project Financing, P&D 기술인수, 미성숙 M&A지원 등을 위한 엔젤형 펀드 운영

<표 1-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장기수익모델

사업모델	주요업무	수익원천
창업형 기술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기업발굴, 사업화기획 • 자회사 설립 • 자회사 경영, 마케팅 지원 • 외부투자유치 지원 	지분매각, IPO, M&A를 통한 자본이익
공공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신규사업 기획, 개발 • 기술사업화 관련 프로그램 대행 	출연금, 보조금
컨설팅	사업기획	컨설팅 수수료
	기술이전	로열티, 기술이전금액의 일정비율
	투자유치	유치자금의 일정비율
	M&A중개	인수금액의 일정비율
	상장주관	공모금액의 일정비율
투자조합 또는 PEF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펀드 결성, 운용 	관리보수 : 펀드약정액 2.5%* 성과보수 : IRR초과수익 20%*

* 프로젝트 펀드 관리 및 성과보수는 펀드의 유형, 운용사의 역량, 기대 수익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나. 사업화 투자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투자

- 사업화 투자모델은 투자를 중심으로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투자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Cash flow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투자회수 수익모델로서, 기술사업화 투자모델에는 전략적 제휴, 지분을 통한 투자방식인 M&A, 그리고 특허권을 통한 라이선스를 활용한 외부거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삼일PWC 정의)
- 다만, 기술(특허) 중심의 자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주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화 투자모델은 한정적이며, 그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기술지주회사의 투자모델은 신설기업, 기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단순화 될 수 있음

<표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사업화 투자모델 및 투자회수 수익모델

유형	목적	사업화 모델	투자회수 수익모델	
전략적 제휴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제휴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수익배분 모델	기술/경영컨설팅 수익	
		글로벌 조달 및 공급망 제휴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공동 생산 및 OEM 제휴	특허권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	
	시장 진출 및 판매 제휴	글로벌 차원의 조달활동으로 비용절감 및 조달 원활화	생산위탁/수탁, 부품조달, 단순 외주가공 계약 모델	n/a
			조달제휴를 위한 조인트벤처 모델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생산 제휴	생산비 절감 및 자사 브랜드의 시장지배력 강화	공동생산, 생산위탁, 수탁, OEM을 통한 계약 모델	n/a
생산제휴를 위한 조인트벤처 모델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판매 제휴	상대국 시장 접근 및 판매 강화	공동브랜드, 판매위탁계약 모델	n/a	
		판매제휴를 위한 조인트벤처 모델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M & A	영업 양도	사실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의 총체적/포괄적 양도를 말함	사업운영을 통한 당기순이익 (컨설팅수익)	
	자산 인수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별적으로 이전 받는 것	사업운영을 통한 당기순이익 (컨설팅수익)	
	주식 스왑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제휴회사의 주식과 맞교환하거나 투자유치의 수단으로 주식을 받는 것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주식 인수	주식의 매수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백도어 리스팅	비상장/비코스닥등록기업이 상장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에 합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장시키는 형태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A&D	기존기업의 인수 후 신기술을 습득/개발하여 기업을 변신시키는 기법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P&A	자산인수의 특수한 형태로 자산과 부채를 인수/매각하되 매도기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인수 매각하는 것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매각수익	

<표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사업화 투자모델 및 투자회수 수익모델

유형	목적	사업화 모델	투자회수 수익모델
특허권	특허 지분 공유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특허권 지분에 대한 공유를 통한 수익창출 시 이익을 상호 배분 받는 것	라이선스 수익
	전용 실시권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특허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라이선스 수익
	통상 실시권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독점적 특허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라이선스 수익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모델로서 국내외 중견기업과의 Joint-Venture 설립 지분투자 방식을 중요 투자모델로 실행하면서, 기설립 기업에 대한 기술현물출자를 통한 지분인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함. 또한, 자회사 또는 초기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을 통한 투자모델을 병행

<표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J/V설립모델과 투자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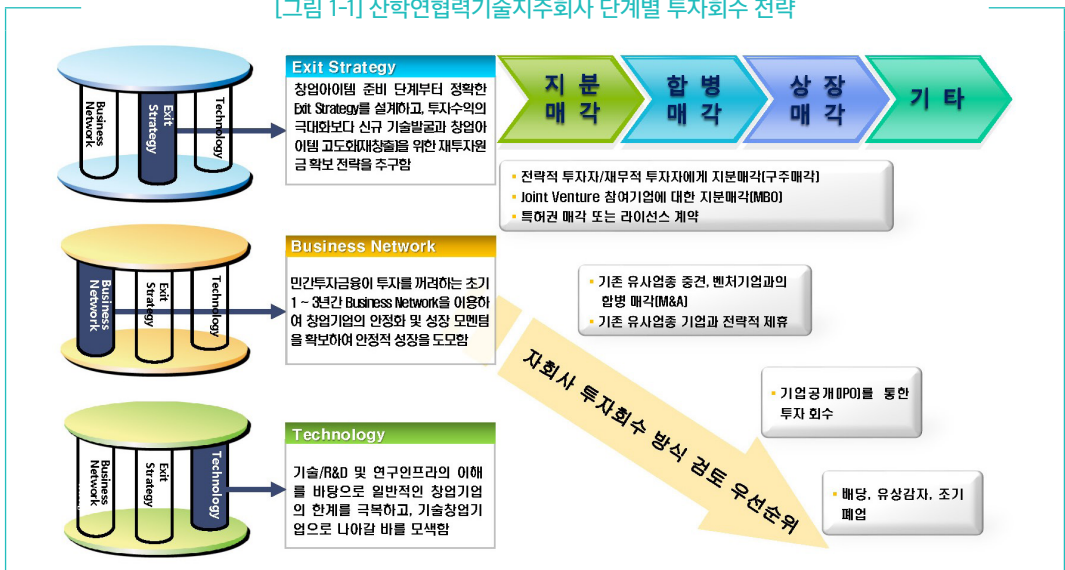
구분	J/V 설립모델	투자모델
국내합작 창업형	• 기업 Value-up을 위해 신규사업 진출이 필요한 국내상장기업, 비상장 중견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모델	• 기술제휴 (공동 기술 사업화를 위한 조인트벤처모델) • 생산제휴 (생산제휴를 위한 조인트벤처 모델)
해외합작 창업형	• 한국시장 진출희망 해외기업, 국내 합작법인 설립희망기업과의 국내 합작법인 설립 또는 Low Tech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 후발국에 진출코자 하는 국내기업과의 해외 합작법인 공동 설립 모델	• 조달제휴 (조달제휴를 위한 조인트벤처 모델) • 판매제휴 (판매제휴를 위한 조인트벤처 모델)
기술지주 공동설립형	• 기술지주회사간 사업화 가능기술(특허)을 클러스터링(7개 ~ 10개)하여 공동으로 국내 중견, 대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모델	• 기술제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수익배분 모델)
단순 출자형	• 사업화 우수기술의 자본화 평가 후 벤처 기업에 출자하고, 자본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실험실창업기업, 학교기업, 개인기업 등의 자회사 전환 설립 모델	• 주식인수 (기술현물출자를 통한 지분인수 모델)
단독 창업형	• 파트너기업 없이 신규기술발굴을 통한 기술지주회사 독자적 설립방식	• 조달제휴 (생산위탁/수탁, 부품조달, 단순 외주가공 계약모델) • 생산제휴 (공동생산, 생산위탁, 수탁,OEM을 통한 계약모델)

다. 투자회수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투자회수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단계부터 정확한 Exit Strategy와 Structure를 설계하고, 투자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신규기술발굴과 기술혁신형벤처(자회사) 재창출을 위한 재투자원금 확보 전략을 추구함

- 민간투자금융이 투자를 꺼려하는 초기 1 ~ 3년간 자회사의 안정화 및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Series A 투자 가능 매출액 달성(10억 ~ 20억) 시 기관 투자자에게 기술지주회사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회수(구주매각)
- 창업초기부터 중견기업과 Joint Venture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1 ~ 3년간 자회사의 비즈니스 확인 후 파트너 중견기업에 기술지주회사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회수(MBO)
- 자회사의 사업안정화 후 구성원(대표이사 등)에 대한 기술지주회사 지분매각을 통한 투자회수 (일정 매출액 달성 시 Buy-back 옵션을 적용하여 창업자에게 지분매각)
- 또한, 초기창업자그룹의 Exit를 위해 기술이전, 인수합병(M&A), 인수개발(A&D), Joint Venture 등 기업성장단계 중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 이전에 지분매각을 지원하고, 기술지주 자회사간 합병 등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확보를 통한 성장 유도
- 자회사 창업 후 2~3년 이내 사업화 가능성 불투명 시 적극적 퇴출·폐업 지원

[그림 1-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단계별 투자회수 전략



출처 : 연구진(2023)

- 자회사별 투자회수 전략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자회사 분류, 관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Exit 전략을 설정
- 설립 2년 미만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우에 2 ~ 3년간에는 C, D 등급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됨

<표 1-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관리

등급	구분 기준	관리방안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내 IPO, M&A 등 자금회수가능 예상 • 매출액 100억 이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상장요건 및 추진일정 점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내 IPO 가능예상 • 전년도 대비 높은성장률 기대(15%이상) • 사업계획대비 70% 이상 실적 시현 • 매출액 50억 이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가능성 점검, 마케팅 진행 상황 • 금융기관 거래상황, 자금조달계획 검토 • 신제품 개발현황, 기타사항 • 투자금 회수 가능성, M&A 가능성, 대주주에 매각 등 검토

<표 1-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관리

등급	구분 기준	관리방안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완료, 매출방식으로 BEP근접 • 향후 1년간 운영자금확보 • 사업계획대비 50% 수준 실적 시현 • 매출액 20억 이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사후관리 필요 • 부실발생 가능요인 점검, 자금확보방안 검토 • 주요 거래처 확보현황, 신제품 개발 현황 및 일정지연 여부 검토 • 투자금 회수 가능성, 대주주에 매각 등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진척 없으면 매출액 5억 미만 • 6개월내 추가자금 확보 필요 • 사업계획대비 20% 수준 실적 시현 • 매출액 5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사후관리 필요 • 사업계획, 제품개발계획 재점검 • 매출실적, 주요 인력 변동사항 월별체크 • 기술매각, M&A 등 검토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휴·폐업이 요구되는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처리

- 중·장기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목적과 기술사업화 역할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주체로 VC, 금융지주, 비금융지주, 국내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소, 대학교), 해외기술지주회사(대학교)별 투자회수 수익모델을 비교 분석한 결과
- 해외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다양한 투자회수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컨설팅 수익과 특허권을 활용한 라이선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사업아이템 발굴보다는 사업아이템 육성차원의 지원에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술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자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특허권에 공동지분을 소유하면서 라이선스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함

<표 1-5> 국내외 투자주체별 투자회수 수익모델 비교 분석

투자회수 모델	VC	금융지주	비 금융지주	국내기술지주	해외기술지주
배당수익	●●	●●	●●	●●	●●
투자주식매각이익	●●●	●	●	●●●	●●
브랜드사용료수익	-	●	-	-	-
경영/기술컨설팅 수익	●	-	●	사업공백 영역	●●●
라이선스 수익	-	-	-		●●●
펀드(조합)운용수익	●●●	-	-	○	●

※ ●는 각 투자주체별 전체 수익 중 해당 수익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 국내 기술지주회사의 사업공백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유무형의 핵심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고유사업의 역량 강화 및 신규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함
- 기술지주회사는 잠재성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을 통한 가능성 있는 자회사 발굴뿐만 아니라, 사업아이템 육성을 위한 기술, 자금, 경영 차원의 Relationship 형성을 통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발굴한 사업아이템에 대한 투자 risk hedge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향후 높은 자회사 매각배수의 실현이 예상됨

0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 관련 법규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회계관리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부분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기관의 회계처리기준은 “벤처투자회사회계처리기준”과 “창업기획자회계처리기준”이 있음
 -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투자자산을 상장사를 제외한 비상장회사의 신주투자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실적자산으로, 그 이외의 투자는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구분되어 있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의 등급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통일된 data 확보를 통한 통계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특성과 관련 법령에 맞는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이 필요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성과 분석 및 정보공시 신뢰성 제고 필요
 - 다만, 산학협력단의 수익구조와 기술지주회사의 수익구조는 매우 상이하므로 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항목 구분과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출자한 자회사이므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과 연계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명시된 회계원칙과 용어를 준용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한 기술(현물)과 현금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투자자산 중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서”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 비상장된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액을 투자자산 중 출자금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각 조문과 제정 예정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6>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의 연계

조문	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연계
제3조	정의	취득원가, 공정가액, 감가상각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15조	회계원칙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등 회계의 기본원칙을 명시한 것이므로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16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는 일반영리기업과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학협력단은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 1-6>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과의 연계

조문	내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연계
제17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자회사에 대한 투자)을 반영하기 위한 계정과목(창업투자자산 등)과 자본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 등을 제외하고는 규칙에 규정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을 가급적 준용하여 지침에 규정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은 규칙과 상이하므로 별도로 규정
제18조	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제19조	재무상태표	자본금에 대한 세부 구분을 제외하고는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0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분류를 제외하고는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1조	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 고유규정이므로 준용 불가
제22조	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산학협력단 고유규정이므로 준용 불가
제23조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를 손익계산서로 수정하면 다른 내용은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4조	운영계산서 작성기준	4항 운영계산서의 구분표시를 제외하면 다른 내용은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5조	운영수익의 인식	산학협력단 고유규정이므로 준용 불가 ※ 사업수익에 대한 인식기준을 별도로 지침에 규정할 필요
제26조	현금흐름표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7조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현금흐름표의 일반적인 작성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8조	자산의 평가기준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29조	유가증권의 평가	기술지주회사의 단기매매증권 및 투자자산의 측정 및 손상차손에 대한 별도의 규정 필요
제30조	재고자산의 평가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삭제
제31조	대손상각 등	대손상각에 대한 부분은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 유형·무형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해서는 지침에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
제32조	감가상각 등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33조	부채의 평가기준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34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35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지침에 동일하게 규정 가능
제38조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는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나,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새로 작성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자산 등에 대한 명세서를 신규로 작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특성 및 효율적 운영관리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비영리법인)은 회계처리규칙이 있으나,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이 없는 상황임
 - 투자자산이 주요 회계처리임에도 매도가능증권 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주식, 투자사채, 조합출자금 등 구분이 어려움
 - 자본금의 경우 현물과 현금 출자금의 구분이 없어 현금출자비율 확인이 바로 어려움
 -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대한 정의가 없어 지주회사별로 임의대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매출인식에 구분 및 계정과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특성과 향후 운영관리 방향에 맞게 필요한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표 1-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유관기관의 회계처리규칙 비교

구분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벤처투자회사 (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소관 부처	교육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회계 처리 기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벤처투자회사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	벤처투자회사등록및 관리규정 제3장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제4장 벤처투자회사의 대손처리 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장 창업기획자의 회계처리기준 제4장 창업기획자의 대손처리규정

<표 1-7>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유관기관의 회계처리규칙 비교

구분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벤처투자회사 (舊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세부 조항	<p>제33조 (회계원칙 등)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학교기업)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p> <p>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p> <p>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1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p>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p> <p>제 5 조 (회 계 처 리 기 준)</p> <p>① 금 용 위 원 회 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p> <p>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p> <p>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 기준</p>	<p>제18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창업기획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p>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p> <p>제 5 조 (회 계 처 리 기 준)</p> <p>① 금 용 위 원 회 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p> <p>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p> <p>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 기준</p>

0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 관련 특징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관리 제도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제정 및 운영
 - 재무제표 규정과 용어는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투자금의 회수가 주된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벤처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여 필요한 내용은 채택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출자기관인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규정을 가급적 준용 및 연계한 “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을 제정 및 운영함으로써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제정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안내서 발간 및 교육

<표 1-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준용사항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준용 및 적용할 사항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비유동자산 준용
창업투자자산의 구분	별도 구분없이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으로 표시	창업투자자산은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표시	별도구분 없음 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회사만 창업기획자 회계처리기준 준용
조합출자금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으로 표시	투자실적자산의 조합출자금으로 표시	창업투자자산에서 조합출자금으로 표시
특허권 (기술현물출자)	무형자산의 특허권으로 표시하고 5년 정액상각	별도 규정 없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무형자산의 특허권으로 분류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현물출자 등에 따라 수익 인식하고 미사용 특허권은 5년 정액상각
자본금	현금및기술현물출자에 상관없이 자본금으로 통합 표시	별도 규정 없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현금출자자본금과 기술현물출자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
투자자산 및 조합출자금 관련 수입	사업외수익으로 처리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등으로 사업수익 처리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등으로 사업수익 처리
현금흐름표상 투자자산의 표시	투자자산은 투자활동으로 표시	별도언급 없음	사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에서 증가 및 감소로 총액 표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II

산학협력력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지침 조문별 해설

0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

가. 회계처리지침 조문 해설

●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술지주회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지침 취지

- 지침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함
- 「산학협력법」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문 해설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등록된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지침 취지
 - 규칙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등록된 기술지주회사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제3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지침 취지
 -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정함
- 조문 해설
 -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으로 구성됨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는 회계처리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먼저 준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 가능성
 - » 법적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특례를 제공함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취득원가로 평가 가능
 - » 관계기업·공동지배기업: 지분법 적용 면제 가능
 - » 유형·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법인세법 기준 사용 가능단, 투자조합의 직접 운용 여부와 같은 예외 가능성은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하므로, 다음 사항의 검토가 필요함
 - » 기술지주회사가 「금융업」에 해당될 가능성(예: 창투자 등록, 펀드 운용 등)이 있는 경우,
 - »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특례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회계법인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필요 시 아래의 내용을 부록 또는 주석으로 명기:

특례 항목	기술지주회사 적용 가능성	판단 기준	주의사항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취득원가 평가	적용 가능	상장 여부 없음	공정가치 평가와 병행할지 여부
관계기업 지분법 미적용	적용 가능	연결재무제표 의무 없음	타 회계기준과 충돌 여부
감가상각 기준 완화	적용 가능	법인세법 상 내용연수 사용 가능	내부 정책과 일치 여부 필요
중소기업 제외 요건 (상장/금융업 등)	대부분 미해당	벤처투자회사 또는 금융업 미등록 여부	조합운용 시 금융업 해당 여부 판단 필요

● 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2. “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제12조 및 제5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다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2년 12월, 해당 법 개정으로 ‘창업자’에서 ‘창업기업’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본 지침서에서는 ‘창업자’란 용어 사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자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해설

-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함

●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제5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지침 취지

- 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비교가능성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특성임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지침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지침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6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기술지주회사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지침 취지

- 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복식부기란 회계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양면성을 파악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관관계를 통해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임
-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함
- 발생이란 미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함
- 이연이란 선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거나, 선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함

- 재무제표

제7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 지침 취지

- 재무제표의 종류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기술지주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함

-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제8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지침 취지

- 회계정책, 회계추정, 오류수정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회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

- » 원칙 :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하되, 전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작성함
- » 예외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미래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음

- 회계추정의 변경

- » 전진적(미래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함

- 오류수정 :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

- »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 » 추정의 오류
- » 계정분류의 오류
- » 계산상의 오류
- » 사실의 누락
- » 사실의 오용 등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 : 당기 손익계산서의 사업외수익 또는 사업외비용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함
-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 오류효과를 계산하여 해당 계정과목의 기초잔액에 반영하되, 전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재작성함

●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제9조(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지침 취지

-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함
- 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제10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지침 취지

- 기술지주회사의 재무제표가 비교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임

- 조문 해설

-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함
-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표시함

●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기술지주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술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표시한다.
2. 기술지주회사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회사의 경우 창업투자자산을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하되, 각각 매도가능증권, 조합출자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투자실적자산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지분의 취득(다만,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투자는 경영지원자산으로 한다.
3.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구분표시한다.
4. '순자산(자본)'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④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 지침 취지

- 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본)으로 구분함
-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함
- 자산 및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보고함
-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임
-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함
- 창업투자자산은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조합출자금, 기타투자자산으로 구분함
-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함
-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함
- 자산, 부채, 자본의 총액 표시를 규정함
- 항목 간 상계를 금지함

● 유동자산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급금 및 부가세대금급 등이 포함된다.

③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및 채권을 말하며, 투자자산 중 상장(기업공개)되어 1년 이내 처분할 계획인 자산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동자산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유동자산은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환금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산으로 규정함

● 창업투자자산

제13조(창업투자자산) ① ‘창업투자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주목적사업인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창업투자자산의 종류에는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조합출자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구분하되,

1.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주식과 투자사채로 나눈다.

가. 투자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보통주 또는 우선주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나. 투자사채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말한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기술지주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으로 한다.

3. 조합출자금은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다.

4. 기타 투자자산은 기술지주회사가 사업목적 투자인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외의 프로젝트투자, 상장주식 투자 및 구주인수 등에 의하여 투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하며,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투자한 회사가 상장됨으로서 상장주식으로 변경된 것은 제외한다. 단, 해당 투자주식(나목은 투자사채)이 추후 증권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재분류하지 않는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업투자자산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창업투자자산은 기술지주회사의 주목적사업인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함
 - 창업투자자산의 종류에는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조합출자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구분함

● 투자자산

제14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목적 이외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운용 및 투자 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한 장기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투자자산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목적 이외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운용 및 투자를 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한 장기금융상품 등을 말함

● 유형자산

제15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비품 및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유형자산 중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유형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유형자산은 경영수단으로 반복사용되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으로 유형자산은 기업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함
-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비품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이 포함됨
- 유형자산 중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유형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비와 상계함
- 유형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함
- 감가상각의 예외 :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
-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임(감가상각비=(취득금액-잔존가액)/내용연수)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여 해당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함

● 무형자산

제16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 ②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상표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계·건물·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상표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됨
-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동안 상각함

-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함
-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함
-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함

● 기타비유동자산

제17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비유동자산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함
 -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을 포함함

● 유동부채

제18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동부채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함
 -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됨

● 비유동부채

제19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동부채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함
 -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됨

● 자본금

제20조(자본금) '자본금'이란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연) 및 기타 주주 등이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자본금과 현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금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자본금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연) 및 기타 주주 등이 현금 및 기술 등의 현물로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자본금과 현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자본잉여금

제21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하며,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잉여금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자본잉여금은 현금 및 기술현물출자시 자본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상법」 459조), 재평가적립금, 자본적 지출에 총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 및 채무면제이익 등 자본거래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을 말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제22조(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자본거래 이외의 평가등으로 발생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손익의 누적금액을 말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투자자산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자본거래 이외의 평가 등으로 발생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손익의 누적금액을 말함

● 자본조정

제23조(자본조정)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조정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함

- 이러한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
 - » 자본에 가산하는 항목 :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인수권대가, 전환권대가, 주식매입선택권 등
 - »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 :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

●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제24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설립 이후 매년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의 누적금액으로 배당가능재원의 기초가 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익잉여금(결손금)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이익잉여금(결손금)은 설립 이후 매년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의 누적금액으로 배당가능재원의 기초가 됨

●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제25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자산의 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함(원가주의)
 - » 원가주의의 예외로 공정가치 평가를 규정함
 - » 교환·(기술)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 부채의 가액은 기술지주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액임
 - » 채무액은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① 채권 등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②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평가와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대손충당금 설정은 투자자산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자본거래 이외의 평가 등으로 발생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손익을 말함
-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 부실채권 :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
 -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 과거의 대손율 등을 감안
- 미수채권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측정

제27조의1(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측정) ①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③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창업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또한, 창업투자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변동금액 중 당기순이익의 지분율 상당액을 지분법손익(당기손익)반영하고 기타 자본변동금액의 지분율 상당액은 자본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창업투자자산 중 조합출자금의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측정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함
 - »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함
-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측정함
-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함
 - »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변동금액 중 당기순이익의 지분율 상당액을 지분법손익(당기손익)반영하고 기타 자본변동금액의 지분율 상당액은 자본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함
 - »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함

●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 손상차손

제27조의2(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손상차손) ①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함
-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 » 그러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함

● 사업권(영업권) 또는 योग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제28조(사업권(영업권) 또는 योग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①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처분자)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권(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योग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사업권(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권(영업권) 또는 योग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처분자)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권(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योग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함
- 사업권(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함

● 채권·채무조정

제29조(채권·채무조정) ①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조정될 채권은 제26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권·채무조정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함
 - » 재조정될 채권은 제26조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함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30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함
 -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함
 - »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함
 - »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 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함
 -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함
 - »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함

●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제31조(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① 포괄손익계산서는 사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정의, 구성, 서식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함
 - 포괄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 포괄손익계산서는 사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함
 - »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함

● 포괄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32조(포괄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가. 사업수익
 - 나. 사업비용
 - 다. 사업이익(손실)
 - 라. 사업외수익
 - 마. 사업외비용
 - 바.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손실)
 - 사. 법인세비용
 - 아. 당기순이익(손실)
 - 자. 주당 손익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생주의 수익 및 비용 인식을 설명함
 - » 발생주의 수익인식 :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
 - » 발생주의 비용인식 :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
 - » 발생주의의 예외 :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한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함
 -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함.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함

- »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함
- »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함
-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함
 - » 사업수익
 - » 사업비용
 - » 사업이익(손실)
 - » 사업외수익
 - » 사업외비용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손실)
 - » 법인세비용
 - » 당기순이익(손실)

● 사업수익

제33조(사업수익) 사업수익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및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투자수익은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창업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며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배당금, 전환사채처분이익, 전환사채이자, 해외투자수익(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2. 투자조합수익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조합관리보수와 투자조합의 운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조합성과보수,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분배받는 조합출자금처분이익 및 기타조합수익으로 한다.
3. 기타사업수익은 유동자산과 운용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하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정부지원사업운영에 따른 컨설팅수입 등으로 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수익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사업수익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및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 투자수익은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며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배당금, 전환사채처분이익, 전환사채이자, 해외투자수익(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 등으로 구분함
 - » 투자조합수익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조합관리보수와 투자조합의 운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조합성과보수,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분배받는 조합출자분배금, 조합출자금처분이익 및 기타조합수익으로 함
 - » 기타사업수익은 유동자산과 운용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하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정부지원사업운영에 따른 컨설팅수입 등으로 함

● 사업비용

제34조(사업비용) 사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사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 및 금융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분한다.

1. 투자 및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처분손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손실, 조합출자지분처분손실, 출자금손실, 손상차손 및 투자비용, 해외투자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으로 한다.
2. 조합관리비용은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조합출자금처분손실, 기타조합손실 등으로 한다.
3. 일반관리비는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출장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회의비,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전력비 등 계정과목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양식사례에 있는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한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용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사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사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 및 금융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분함
 - » 투자 및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처분손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손실, 조합출자지분처분손실, 출자금손실, 손상차손 및 투자비용, 해외투자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으로 함
 - » 조합관리비용은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조합출자금처분손실, 기타조합손실 등으로 함
 - » 일반관리비는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출장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회의비,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전력비 등 계정과목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양식사례에 있는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함

● 수익인식기준

제35조(수익인식기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할 수익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익인식기준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수익인식기준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할 수익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함
 - » 다만, 수익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자본변동표

제36조(자본변동표) ① 자본변동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자본을 구성하는 납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본구성요소 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표시한다.
 ② 자본변동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규정함
- 조문 해설
 - 자본변동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자본을 구성하는 납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본구성요소 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표시함

● 현금흐름표

제37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 등의 현금흐름을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감,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창업투자자산의 증감에 의한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자산부채의 변동에 증가와 감소(처분)로 각각 표시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와 작성방법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 등의 현금흐름을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감,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 현금흐름표는 세 가지 현금활동의 순 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 »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현금의 구성항목 간 이동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함
 - » 현금흐름표상의 동일한 거래의 현금흐름이 두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활동별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창업투자자산의 증감에 의한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자산부채의 변동에 증가와 감소(처분)로 각각 표시함

● 주식사항

제38조(주식사항)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
2.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
3.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
4.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5.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
6.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7. 기술지주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8.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9. 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
11. 우발손실과 우발이익의 내용
12.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13.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14. 배당금의 산정내역
15.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
16. 「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7.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18.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19. 포괄손익

- 지침 취지

-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식사항을 규정함

- 조문 해설

-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함
 - »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
 - »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

- »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
- »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 »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
- »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 » 기술지주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 » 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
- » 우발손실과 우발이익의 내용
- »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 »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 » 배당금의 산정내역
- »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
- » 「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Ⅲ

재무상대표 계정과목

01 재무상태표의 개요

가. 재무상태표

- 개요
 - 재무상태표는 기술지주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함
 - 작성기준
 -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함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함
 -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함

02 자산

가. 유동자산

- 개요
 - 유동자산은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화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당좌자산'과 복잡한 제조과정이나 판매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자산'으로 구분
 - 유동자산의 분류
 - »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 위 3가지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나. 창업투자자산

- 개요
 - 창업투자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주목적사업인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
 - 창업투자자산의 종류로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조합출자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구분
 -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주식과 투자사채로 구분

- ① 투자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보통주 또는 우선주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
- ② 투자사채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기술지주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
- 조합출자금은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기타 투자자산은 기술지주회사가 사업목적 투자인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외의 프로젝트투자, 상장주식 투자 및 구주인수 등에 의하여 투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하며,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투자한 회사가 상장됨으로써 상장주식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다. 비유동자산

- 개요
 -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자산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자산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
 - 비유동자산의 분류
 - »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장기의 성격을 갖는 금융자산 등이 있음
 - » 유형자산에는 건물, 구조물, 기계장치, 토지, 건설중인자산 등이 속하며,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이 속해 있음
 - » 장기의 성격을 갖는 금융자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20% 미만의 지분투자증권이나 채권 등), 장기매출채권(사업활동을 통해 인식한 매출채권 중 정상사업(영업)주기를 초과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이 해당

<표 3-1>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 명세표

과목	해설
자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요구불예금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3. 단기매매증권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4. 단기대여금	대여금 중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표 3-1>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 명세표

과목	해설
5. 미수금	산학협력계약과 운영외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6. 미수수익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
대손충당금	미수수익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7. 선급금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
8. 선급비용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되는 비용
9. 미수법인세환급액	미수된 법인세의 환급세액
10.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
11. :	
II. 창업투자자산	
(1) 매도가능증권	
1. 투자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보통주 또는 우선주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
2. 투자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3. 기타	기타의 투자자산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술지주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
(3) 조합출자금	조합 기업에 자본출자
(4) 기타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조합출자금 외 투자자산
:	
I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
2. :	
(2) 유형자산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2. 건물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3.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	
(3) 무형자산	
1. 사업권(영업권)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자산

<표 3-1>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과목 명세표

과목	해설
2. 기타무형자산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받은 특허권
3.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
⋮	
(4) 기타비유동자산	
1.	
2.	
자산총계	

라. 유동자산 항목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미수수익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양도성 예금증서, 금전신탁, 신종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등)을 의미
 - 미수수익은 당기에 발행하였지만 수취하지 않은 운영외수익으로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항목에 속함

사례 3-1

20×3.03.01 주거래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 5천만원(이자율 연3%) 가입

(차변)	단기금융상품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
------	-------------------	------	---------------------

20×3.12.31 재무상태표일 현재 만기 2개월 도래

분 개 없 음(단기금융상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 하지 않음)			
미수이자 계상(50,000,000×3%×10개월÷12개월=1,250,000)			
(차변)	미수수익 1,250,000	(대변)	이자수익 1,250,000

20×4.02.29 정기예금 만기일 해지(예금이자 50,000,000 × 3% = 1,500,000/원천징수 없음 가정)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1,500,000	(대변)	단기금융상품 50,000,000
			미 수 수 익 1,250,000
			이 자 수 익 250,000

※ 연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예금, 현금, 제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다가 결산시점에 통합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가능

●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소유
- 소유기간은 1년 이내에 자금운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 운영외손익으로 계상

사례 3-2

20×3.04.01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주)M사 상장주식을 3천만원 매입

(차변)	단기매매증권 3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	-------------------	------	---------------------

20×3.12.31 (주)M사 상장주식의 시가 3천3백만원

(차변)	단기매매증권 3,000,000	(대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0
------	------------------	------	----------------------

20×4.02.01 (주)M사 상장주식 3천 4백만원에 처분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4,000,000	(대변)	단기매매증권 33,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00
------	---------------------	------	---

● 단기대여금

- 단기대여금은 대여금 중 결산일로부터 기산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대여금
- 대여금이라도 빌려준 상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름. 주주, 임원, 종업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지는데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일정비율만큼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사례 3-3

20×3.05.01 차용증서에 따라 (주)N회사에 2천만원을 3개월간 대여(이자율 연3%)

(차변)	단기대여금 2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0
------	------------------	------	---------------------

20×3.07.31 (주)N회사에 대여한 2천만원과 이자 150,000원(20,000,000×3%×3개월÷12개월=150,000) 수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150,000	(대변)	단기대여금 20,000,000 이자수익 150,000
------	---------------------	------	----------------------------------

● 미수금

- 미수금은 미래에 현금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계정으로 산학연협력계약과 운영의 거래(자산매각 등)로부터 발생한 수취채권

사례 3-4

20×3.05.10 (주)D기업과 5천만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으나 3천만원만 수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미 수 금 20,000,000	(대변)	경영자문수수료 50,000,000
------	---	------	--------------------

20×3.06.15 회사에서 보유하는 기계기구(취득원가 2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를 1천3백만원에 매각하고 70% 선수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9,1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미 수 금 3,900,000	(대변)	기 계 기 구 2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0
------	---	------	--

● 선급비용

- 선급비용은 지급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의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보험료, 지급이자, 임차료 등에서 발생

사례 3-5

(case 1) 비용인식 후 선급비용계상

20×3.07.01 K보험사와 화재보험 1년 가입비 1천2백만원 가입하고 보험료 지급

(차변)	보험료 1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	----------------	------	---------------------

20×3.12.31 보험기간 1년 가입비 1천2백만원 중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 비용인식

(차변)	선급보험료 6,000,000	(대변)	보험료 6,000,000
------	-----------------	------	---------------

(case 2) 선급비용 인식 후 보험계상

20×3.07.01 K보험사와 화재보험 1년 가입비 1천2백만원 가입하고 보험료 지급

(차변)	선급보험료 1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	------------------	------	---------------------

20×3.12.31 보험기간 1년 가입비 1천2백만원 중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 비용인식

(차변)	보험료 6,000,000	(대변)	선급보험료 6,000,000
------	---------------	------	-----------------

마. 창업투자자산 항목

- 매도가능증권(투자주식, 투자사채)
 - 투자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보통주 또는 우선주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
 - 투자사채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사례 3-6

20×3.06.10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를 진행하는 김00창업자 비상장주식 7%를 3천만원에 취득

(차변)	투자주식 3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	-----------------	------	---------------------

20×3.07.20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를 진행하는 J벤처기업 비상장주식 5%를 4천만원에 취득

(차변)	투자사채 4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0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기술지주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
 - 지분법이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상품(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규정하는 것
 -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사업(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 보유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미만 보유 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지분율 계산시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 지분을 단순합산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우선주), 전환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지분율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
 - 지분법 회계처리
 -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순이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 관계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취득으로 회계처리,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며 자본감소 대가에서 [유상감자 전 투자기업의 지분금액 - 유상감자 후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하여 처분손익에 반영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원이하가 될 경우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단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원으로 처리하며,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이후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관계기업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

사례 3-7

투자기업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 : 20%
 과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투자기업이 인식하지 않은 관계기업의 손실 누적분 : 1억원
 관계기업의 당기이익 : 6억원

투자기업 분개 -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6억원 × 20% = 1억2천만원]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0,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120,000,000
손실누적분 반영			
(차변)	지분법이익 100,000,0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

- 유의한 영향력을 상실시에는 지분법을 중단하고 매도가능증권(투자주식)으로 분류하면 잔여지분은 동 시점의 장부금액을 적용

바. 비유동자산 항목

- 장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은 자금운용 목적으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상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말하며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결산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이를 장기금융상품에서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 대체

사례 3-8

20×2.03.01 주거예 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 1억원 가입

(차변)	장기금융상품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	--------------------	------	----------------------

20×3.12.31 결산시 정기예금 만기가 1년이내(2개월)로 다가옴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차변)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대변)	장기금융상품 100,000,000
------	--------------------	------	--------------------

-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활동에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으로 구분
 -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각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취득원가에는 매입자금 외에 유형자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기까지 소요된 운반비, 설치비 및 각종 공과금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

취득원가 = 매입금액 + 부대비용

-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당해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으로 계산하나 주로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정액법은 매기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1년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text{정액법 1년 감가상각비}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액}}{\text{내용연수}}$$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하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잔존가액은 내용연수 경과 후 유형자산의 예정처분가액으로 이를 추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영(0)으로 봄
- 내용연수는 자산마다 실제 사용가능연수를 추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세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의내용연수는 건물구조에 따라 20~40년으로 보고 기계기구,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내용연수는 보통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월로부터 월할로 감가상각비 계산

사례 3-9

20×3.03.01 차량운반구 구매(3천만원)하였으며 탁송비로 60만원 지급

(차변)	차량운반구 30,6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600,000
------	------------------	------	---------------------

20×3.12.31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0원[30,600,000/5년×10개월/12개월=5,100,000]

(차변)	감가상각비 5,1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5,100,000
------	-----------------	------	-------------------

- 소액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상각의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일부발취
 - 소액취득자산·소액수선비·단기사용자산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시부인계산 없이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이를 활용 자산취득 시 유형자산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여 회계처리를 간편히 할 수 있음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로 지식재산권, 개발비, 기타무형자산으로 구분, 지식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하는데 무형자산에는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록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무형자산항목으로 사업권(영업권)과 특허권이 있으며 사업권(영업권)은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처분자)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권(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영업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처리
- 사업권(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유형자산과 달리 당해 자산에 직접 차감하여 표시
- 특허권은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출자받은 것으로, 해당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실현가액(공정가치) 간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잔존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그 금액을 처분손실로 인식

03 부채

가. 유동부채

- 개요
 -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유동부채로 분류
 - 유동부채의 분류
 - » 정상사업(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
 -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
 - »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는 경우
 - »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재무상태표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동안 무조건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비유동부채

- 개요
 - 기업의 부채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부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
 - 비유동부채의 분류
 - »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부채
 - »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보고일 이후 12개월 또는 정상사업(영업)주기 내에 결제해야 하거나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또는 재무상태표상 보고일 이후 12개월을 넘겨서까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더라도 그 권리가 무조건적이지 않은 부채로 정의
 - » 이때 기업의 정상사업(영업)주기는 사업(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명확한 정상사업(영업)주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하여 유동성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비유동부채는 지불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

<표 3-2>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부채	
I.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변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2. 미지급금	계약과 운영의 거래(자산취득 등)로부터 발생한 지급채무
3. 선수금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
4. 예수금	일시적 제예수액
5. 미지급비용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6. 미지급법인세	당기에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법인세

<표 3-2> 재무상태표 부채 계정과목명세서

과목	해설
7. 선수수익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
8.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금 등의 고정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
9. :	
II. 비유동부채	
1. 사채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2. 장기차입금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3.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말 현재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연금미지급금	당기에 발행하였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퇴직보험예치금	퇴직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
:	
부채총계	

다. 유동부채 항목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은 일시적 자금운용을 목적(1년 이내)으로 차입하는 자금과 변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사례 3-10

20×3.03.01 주거래은행에서 일시자금 운용을 위해 1년 1억원(이자율 연6%) 차입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대변)	단기차입금 100,000,000
------	----------------------	------	-------------------

20×3.12.31 기말 미지급비용(미지급이자) 계상

미지급이자 계상(100,000,000×6%×10개월÷12개월=5,000,000)

(차변)	이자비용 5,000,000	(대변)	미지급이자 5,000,000
------	----------------	------	-----------------

20×4.02.29 주거래은행에 차입금 1억원 상환(1년 이자상당액 6백만원 포함)

(차변)	단기차입금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6,000,000
	미지급이자 5,000,000		
	이자비용 1,000,000		

- 선수금 및 선수수익
 - 선수금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표시하고 선수수익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을 표시

사례 3-11

20×3.03.01 (주)V기업에 1년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수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0	(대변)	경영자문수수료 12,000,000
------	---------------------	------	--------------------

20×3.12.31 기말에 컨설팅 진행 결과 2/3 진행

당기 진행 12,000,000 × 2/3 = 8,000,000 선수수익 12,000,000 × 1/3 = 4,000,000			
(차변)	경영자문수수료 4,000,000	(대변)	선수수익 4,000,000

※ 차기 20×4.01.01~20×4.02.29 까지의 수익 이연 부채로 계상

- 예수금
 - 일시적으로 기업에서 보관하였다가 다시 지출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계상하는 계정과목
 - 대표적인 사례로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본인부담분에 대한 일시 예수액을 볼 수 있음

사례 3-12

20×3.03.25 3월분 인건비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4대보험 자부담분 2백만원 차감지급

(차변)	인건비(급여) 2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8,000,000 예수금(제세예수금) 2,000,000
------	--------------------	------	---

20×3.04.10 3월분 소득세 등 예수금 2백만원 세무서 등에 납부

(차변)	예수금(제예수금) 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2,000,000
------	---------------------	------	--------------------

-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발행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은 비용으로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료, 미지급보험료, 미지급세금 등이 미지급비용에 포함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기준
 - 미지급금은 비용의 발생이나 자산의 구입 등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 중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
 -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주의에 따라 기말시점까지의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정산기일 등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

라. 비유동부채 항목

- 사채 및 장기차입금
 - 사채란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채무상품을 발행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 사채의 발행금액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 액면이자율은 표시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 사채를 발행한 기업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서에 표시된 이자율이며, 시장이자율이란 그 사채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말함
- 사채는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따라 발행금액이 결정

<사채 발행금액 결정>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사채 액면발행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사채 액면금액 이하 할인 발행
- 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 사채 액면금액 이상 할증 발행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 » 전환사채란 사채소지자의 희망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이 있음
 - »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한 사채
- 장기차입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환일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함
- 장기차입금 중 상환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장기부채라하며 하며 이는 유동부채로 재분류

사례 3-13

20×1.09.01 주거은행에서 장기자금운용을 위해 3년 5억원(이자율 연6%) 차입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00	(대변)	장기차입금 500,000,000
------	----------------------	------	-------------------

20×1.12.31 기말 미지급비용(미지급이자) 계상

미지급이자 계상(500,000,000×6%×4개월÷12개월=10,000,000)			
(차변)	이자비용 10,000,000	(대변)	미지급이자 10,000,000

20×2.08.31 연이자 지급

연이자 (500,000,000×6%=30,000,000)			
(차변)	이자비용 20,000,000 미지급이자 1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20×2.12.31 기말 미지급비용(미지급이자) 계상

미지급이자 계상(500,000,000×6%×4개월÷12개월=10,000,000)			
(차변)	이자비용 10,000,000	(대변)	미지급이자 10,000,000

20×3.08.31 연이자 지급

연이자 (500,000,000×6%=30,000,000)			
(차변)	이자비용 20,000,000 미지급이자 1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20×3.12.31 기말 미지급비용(미지급이자) 계상 및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미지급이자 계상(500,000,000×6%×4개월÷12개월=10,000,000)			
(차변)	이자비용 10,000,000	(대변)	미지급이자 10,000,000

장기차입금 만기 1년 이내 도래 유동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			
(차변)	장기차입금 500,000,000	(대변)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000

20×4.08.31 주거래은행에 장기차입금 5억원 상환(이자상당액 3천만원 포함)

(차변)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000 미지급이자 10,000,000 이자비용 2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30,000,000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놓는 계정과목
-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하는 이유는 회계원칙 중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회계처리로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예상액으로 계산

사례 3-14

20×3.01.01 기초 재무상태표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계상

20×3.10.30 직원 1명 퇴직 퇴직금 1천만원 지급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
------	---------------------	------	---------------------

20×3.12.31 결산시 퇴직금 추계액 5천5백만원

당해연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계상액 : 55,000,000-(50,000,000 - 10,000,000)=15,000,000			
(차변)	퇴직급여 15,000,000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직원을 연금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상품에 가입
- 퇴직연금상품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는 확정기여형(DC)과 사전에 퇴직급여의 수준 또는 내용을 확정하는 확정급여형(DB)로 구분

<표 3-3>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 가능)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퇴직급여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세액공제 혜택	없음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사유충족시 가능
적합한 기업·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채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은 납부할 때 비용계정인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며, 이는 퇴직연금을 외부에 위탁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회사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과 이자증가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에 계상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 이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부채에 충당할 금액의 일부를 외부에 예치시켜 놓은 것과 비슷하므로 회사의 부채 지급의무를 그만큼 감소한다고 봄

사례 3-15

20×2.12.3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3천만원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

(차변)	퇴직급여 3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	-----------------	------	---------------------

20×3.06.30 직원 1명 퇴직

“회계처리없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

사례 3-16

20×2.12.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3천만원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
------	---------------------	------	---------------------

20×3. 중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수익 1,500,000원 발생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500,000	(대변)	이자수익 1,500,000
------	--------------------	------	----------------

20×3.12.31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총당부채 잔액은 7천만원, 이때 재무상태표의 표시

퇴직급여총당부채	7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31,500,000)
	38,500,000

20×4.02.28 직원 1명 퇴직, 총 퇴직금 12,000,000원이고, 이중 회사지급분은 3,000,000원이며 나머지는 퇴직연금에서 지급

(차변)	퇴직급여총당부채 12,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9,000,000

04 자본

가. 자본의 정의와 구성

- 자본의 정의
 -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며, 주주로부터의 납입자본에 기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활동으로부터의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
- 자본의 분류
 - »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함
 - »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
 - »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
 -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표 3-4> 재무상태표 자본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자본	
I.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원시 출자한 투자자본으로 정관에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설정되어있는 금액으로 보통주인 것
현금자본금	출자한 투자자본으로 현물(기술, 노하우 등)로 이루어진 것
현물자본금	출자한 투자자본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
2. 우선주자본금	원시 출자한 투자자본으로 정관에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설정되어있는 금액으로 우선주인 것
현금자본금	출자한 투자자본으로 현물(기술, 노하우 등)로 이루어진 것
현물자본금	출자한 투자자본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
2. 감자차익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더 적은 돈을 주주에게 주면서 발생하는 차익
3. 기타자본잉여금	사업활동 이외에서 실현된 잉여금으로 주식의 납입, 현금, 자본 수정 등 자본거래로 생기는 것
4. :	

<표 3-4> 재무상태표 자본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III. 자본조정	
1.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
3.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손익으로 처분이 실현될 때까지 매년 기말에 평가손익이 발생하며, 그전에 있던 평가손익과 상계처리
2. (부의)지분법 자본변동	지분법 기타포괄손익으로 피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이 변동할 경우 투자회사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3. :	
V.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1. 법정적립금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2. 임의적립금	회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한 것
3.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사업활동을 한 결과 얻게 된 순이익금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
자본총계	

나. 자본금 항목

● 보통주자본금 및 우선주자본금

- 자본금이란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연) 및 기타 주주 등이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 금액을 말하여 현금자본금과 현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
-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하며 주식의 액면가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정
- 현금자본금은 액면가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확인하여 산정하지만, 현물자본금은 주로 지식재산권(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등)의 출자로 기술가치평가 단계를 거쳐 자본금으로 전입
- 우선주자본금은 배당을 우선한다거나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권을 주는 등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주는 경우를 말하며 우선주에 대하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함

사례 3-17

20×3.03.01 00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현금1억원, 지식재산권(특허권-기술가치평가금액1억원)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보통주를 발행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 지식재산권(특허권) 100,000,000	(대변)	보통주 현금자본금 100,000,000 보통주 현물자본금 100,000,000
------	--	------	--

※현물 출자 비율 1배수 가정

다. 자본잉여금항목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명목가치 또는 액면가치를 초과하게 될 때 그 차액 만큼의 금액을 의미. 즉,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이를 나타냄
 - 액면가 : 주식에 적혀있는 액면 금액
 - 발행가 :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가격(시가)

사례 3-18

20×3.03.01 (주)00기술지주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가 15,000원 보통주식 10,000주를 추가발행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50,000,000	(대변)	보통주 현금자본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주식 액면가 @10,000

- 감자차익
 - 감자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제거하는 재무활동으로, 보통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결산을 보전하거나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되어있는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일
 - 유상감자(실질적감자)
 - 단순 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일로, 주식의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사라진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
 - 기업이 판단했을 때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며, 주주입장에서는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 비율대로 보상받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면 유통물량이 적어지면서 주가 상승효과가 발생하기도 함
 - 무상감자(형식적감자)
 - 무상으로 주식을 줄이는 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보유주식을 잃게 되며, 무상감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보통 경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
 - 기업으로서는 주주에게 보상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자산 총액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

사례 3-19

20×4.02.01 (주)00기술지주회사는 유상감자 결정, 기존 액면가 1만원 주식 10,000개를 주당 8천원에 매입하여 소각

(차변)	자본금	10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00
				감자차익	20,000,000

※주식 액면가 @10,000

- 기타자본잉여금

- 기타자본잉여금은 크게 자사주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가 있음
 - 자사주처분이익
 - » 시장에서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처분이익이 취득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의미
 - » 자기주식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손실은 자본조정으로 계상
 - 전환권대가
 - » 전환사채 발행시에 전환권옵션가치로 구분하여 표시, 권리행사분에 해당되는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 대가로 현금을 받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 신주인수권대가
 - » 신주인수권 발행 시, 신주인수권옵션의 가치를 표시한 금액, 전환권대가처럼 권리행사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

라. 자본조정항목

- 자기주식

- 발행한 자기회사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회계기준에서 채택한 자본의 차감계정인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원가법)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먼저 상계회계처리하고 상계할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로 매기 균등상각하여 동 금액만큼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에서 상각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주식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
-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과목이 있으며 재무상태표일 때 현재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포함

바. 이익잉여금 항목

- 법정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어 현금배당이 제한되는 이익잉여금
 -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법정적립금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유일하며,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이나 현물배당액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의적립금
 - 임의적립금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
 - 자율적으로 회사에 의해 적립되며 일시적으로 현금배당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의 재원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창출한 당기순손익 중 배당,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또는 다른 이익잉여금계정으로 대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 일반적으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당기순손익의 합계로 계산

<표 3-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영구적인 현금배당불능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일시적인 현금배당불능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즉시 현금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IV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01 포괄손익계산서 개요

가. 포괄손익계산서

- 개요
 -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함
- 작성기준
 - 포괄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포괄손익계산서는 사업수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사업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함.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함

<표 4-1>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I. 사업수익	
(1) 투자수익	
1. 투자주식처분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매도하고 발생한 이익
2. 투자주식배당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익
3. 전환사채처분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4. 전환사채이자	전환사채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6. 지분법이익	피투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해서 얻은 이익
7. 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투자주식의 급격한 하락으로 과거 발생한 손상차손이 시장가치 상승으로 회복된 경우 기존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
8. 투자사채손상차손환입	투자사채의 급격한 하락으로 과거 발생한 손상차손이 시장가치 상승으로 회복된 경우 기존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
9.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급격한 하락으로 과거 발생한 손상차손이 시장가치 상승으로 회복된 경우 기존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
10. :	
(2) 투자조합수익	
1. 조합관리보수	출자조합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
2. 조합성과보수	출자조합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
3. 조합분배금	출자조합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
4. 조합출자금처분이익	조합 출자금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표 4-1>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5. 조합지분법이익	출자조합의 지분법 평가로 발생하는 이익
6. 조합출자금손상차손환입	출자조합의 과거 발생한 손상차손이 시장가치 상승으로 회복된 경우 기존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
7. :	
8. 기타조합수익	
(3) 기타의사업수익	
1. 경영자문수수료	경영문제 분석,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의 제공에 대한 보수
2. 이자수익	은행예금이나 대여금, 유가증권 등의 수입이자 등
3. 배당금수익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
4.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5.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장부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 계상
6. 투자자산처분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
II. 사업비용	
(1) 투자비용	
1. 투자주식처분손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2. 전환사채처분손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4. 지분법손실	피투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5. 프로젝트투자처분손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발생한 손실
6. 투자주식손상차손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투자주식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투자사채손상차손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투자사채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9. :	
(2) 투자조합비용	
1. 조합출자금처분손실	조합 출자금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2. 조합지분법손실	출자조합의 지분법 평가로 발생하는 손실

<표 4-1>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3. 조합출자금손상차손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조합출자금이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	
5. 기타투자조합비용	기타투자조합비용
(3) 기타의 사업비용	
1. 이자비용	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등
2. 지급수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
3.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4.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결과 발생한 손실
5. 투자자산처분손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
6. :	
7. 기타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
(4)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봉급, 수당, 연금 기타 근무에 대한 대가
2. 퇴직급여	퇴직시 지급하는 비용
3. 복리후생비	복지와 후생 등 부가급부를 위해 지불되는 경비
4. 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5. 임차료	임차한 건물, 토지, 기계장비 및 장치 등에 대한 비용
6.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비출한 비용이나 물품
7.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8. 세금과공과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급비용인 공과금
9. 광고선전비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등의 판매,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
10. 연구비	개발을 위한 연구나 기초연구 등의 활동 비용 등
11. 여비교통비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12. 통신비	통신관련 비용
13. 수도광열비	수도료, 전력료, 연료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수선비	보유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15. 보험료	보험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요금
16. 차량유지비	법인명의 차량의 수리 및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7. 소모품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18. 교육훈련비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된 직·간접적인 비용

<표 4-1>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과목	해설
19. 도서인쇄비	도서나 인쇄비용으로 신문, 잡지 구독료 및 도서구입대금, 명함인쇄비용, 복사료 등을 처리
20. 회의비	회의(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21. 협회비	협회가입에 따른 발생 비용
22. :	
23. 잡비	기타잡비
III. 사업이익(또는 사업손실)	
IV. 사업외수익	
1. 이자수익	은행예금이나 대여금, 유가증권 등의 수입이자 등
2. 임대료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는 대가
3. 외환차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4. 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5.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6. :	
7. 잡이익	기타 이익
V. 사업외비용	
1. 기타의대손상각비	기타 유형자산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2. 외환차손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3.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4.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5.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6. :	
7. 잡손실	기타 손실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순이익(순손실)
VII. 법인세비용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VIII.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순수하게 이익(손실)로 남은 금액
IX.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1주당 얼마나 벌었는지를 계산한 값으로 당기순이익을 보통주 발행주식수로 나눠서 계산

02 수익 및 비용 인식기준

가. 수익

● 수익의 인식

-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이는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
- 수익의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인식기준을 구체화하면, 수익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
 -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 인식하며, 수익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 실현
 -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
 -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은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기업실체가 보유한 수량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함. 기업실체의 수익 창출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 등으로 나타나며, 수익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했을 때 가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봄

나. 비용

● 비용의 인식

-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이는 비용의 인식이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
-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
 - » 예시 :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
 -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
 - » 예시 : 판매비와 관리비
 -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
 - » 예시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
- 과거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수반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비용을 인식

다. 수익비용 대응

-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자수익과 이자비용도 각각 총액에 의해 기재 및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 후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당기순이익(순손실)을 보고

03 사업수익

가. 사업수익구분

- 사업수익
 - 사업수익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및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 투자수익
 - »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며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배당금, 전환사채처분이익, 전환사채이자, 해외투자수익(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 등으로 구분
 - 투자조합수익
 - »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조합관리보수와 투자조합의 운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조합성과보수,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분배받는 조합분배금, 조합출자금처분이익 및 기타조합수익으로 구분
 - 기타사업수익
 - » 유동자산의 운용,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하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정부지원사업운영에 따른 컨설팅수입으로 구분

04 사업비용

가. 사업비용구분

- 사업비용
 - 사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행하는 비용으로 모든 사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 및 금융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

- 투자 및 금융비용
 - »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처분손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손실, 조합출자지분처분손실, 출자금손실, 손상차손 및 투자비용, 해외투자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분
- 조합관리비용
 - »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조합출자금처분손실, 기타조합손실 등으로 구분
- 일반관리비
 - »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출장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회의비,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전력비 등 계정과목으로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구분

05 사업외손익

가. 사업외손익의 정의

- 사업외손익
 - 사업외수익이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부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하여, 사업외비용이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비용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 여유 자금을 일시 운용하기 위한 예·적금과 관련된 이자수익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인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을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업이 아닌 경우 사업외수익으로 인식
 - 수입임대료
 - » 회사의 주요 목적사업이 부동산 임대업 등 임대료 수익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외수익으로 인식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손익
 - »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이 사업활동으로 분류되기 어려움, 처분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는 처분 손익으로 인식
 - 기타의 대손상각비
 - »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판관비 내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지만, 영업외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 기부금
 - »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식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
-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손상차손
 - » 자산의 순사용가치 또는 실현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사업외비용으로 분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The background is a solid teal color with a complex pattern of overlapping, semi-transparent geometric shapes in various shades of teal,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The shapes are primarily rectangular and trapezoidal, arranged in a way that suggests a 3D architectural or industrial structure.

V

자본변동표

01 의의

가.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의 목적
 -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 자본변동표 작성방법
 - 자본변동표 작성을 위해 먼저 자본금,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항목정리
 - 자본변동표는 기본적으로 기간별로 작성되며, 기간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잔액을 확인하여, 이전 기간의 자본잔액에서 변동된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변동표를 작성
 - 자본변동표 작성 절차
 - 자본변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 정리
 - 이익잉여금,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등의 항목 정리
 - 기간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잔액 확인
 - 자본변동표는 기간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잔액을 확인
 - 이전 기간의 자본잔액에서 변동된 금액 계산
 -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기간의 자본잔액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자본변동액을 계산
 - 자본변동표 작성
 -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줌

02 기본구조

가. 자본변동표 구조

- 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
 -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
 -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
 -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밖의 항목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
 -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
 - 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 ②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 ③ 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 ④ 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 ⑤ 당기순손익
 - ⑥ 기타 : ① 내지 ⑤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

04 주식 공시

가. 구조

- 주식 포함사항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 회계기준에서 주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 주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 내역 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최초 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 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장
 1.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
 2.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
 3.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
 4.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5.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
 6.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7. 기술지주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가,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8.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9. 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의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
 11. 우발손실과 우발이익의 내용
 12.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13.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14. 배당금의 산정내역
 15.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
 16. 「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7.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18.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19. 포괄손익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VI

현금흐름표

01 의의

가.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의 목적
 -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
- 현금흐름표의 유용성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창출 능력에 관한 정보제공
 - 현금흐름표는 경영활동별 현금흐름을 반영, 보고함으로써 재무제표를 이용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능력을 향상시킴
 - 이익의 질에 관한 정보제공
 - 현금흐름표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반영, 보고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투자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또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였는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 현금흐름표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반영, 보고함으로써 자금이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는지 주식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와 부채는 어느 정도 상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기업의 배당금 지급능력, 부채의 상환능력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제공
 - 기업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으로 배당을 하고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나, 사업활동에서 수입된 현금보다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함
 - 만약에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부족 자금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경우 심한 자금 압박으로 인한 도산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현금흐름표는 배당금 지급능력, 부채의 상환능력 및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02 작성원칙

가. 구조

-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
 -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현금및현금성자산(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의 것)을 말함

03 현금흐름표의 표시 및 보고

가.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작성 및 표시
 - 사업활동이라 함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
 -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컨설팅 등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이 포함
 -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기술 등의 매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유출이 포함
 -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
 - 직접법
 - »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
 - »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
 - 간접법
 - »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 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 ②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 ③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작성 및 표시
 -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함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작성 및 표시
 -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

04 현금흐름표 양식 예시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는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을 사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의 순 현금흐름의 합계에 기초현금을 가산하여 기말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

<표 6-1>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00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00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0000기술지주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I.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xxx
1. 당기순이익 (손 실)	xxx		xxx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투자주식처분 손실				
투자사채처분 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손실				
지분법 손실				
프로젝트투자 처분손실				
투자주식 손상차손				
투자사채 손상차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조합출자금 처분손실				
조합지분법 손실				
조합출자금 손상차손				
운용투자주식 처분손실				
운용투자사채 처분손실				
운용투자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처분손실				
운용투자지분법 손실				
해외유가증권 처분손실				
약정투자 손실				
운용투자주식 손상차손				
운용투자사채 손상차손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해외유가증권 손상차손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외화환산 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xxx			
투자주식 처분이익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투자사채 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지분법이익				
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				
투자사채 손상차손 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				
조합출자금 처분이익				
조합지분법 이익				
조합출자금 손상차손 환입				
운용투자주식 처분이익				
운용투자사채 처분이익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				
운용투자지분법 이익				
해외유가증권 처분이익				
운용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				
운용투자사채 손상차손 환입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상차손 환입				
해외유가증권 손상차손 환입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				
외화 환산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손충당금 환입				
∴				
4.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xxx			
미수금의 감소(증가)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선급금의 감소(증가)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미수법인세 환급액의 감소(증가)				
투자주식의 감소				
투자주식의 증가				
투자사채의 감소				
투자사채의 증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증가				
조합출자금의 감소				
조합출자금의 증가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단기매매증권의 감소				
단기매매증권의 증가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선수금의 증가(감소)				
예수금의 증가(감소)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퇴직급의 지급				
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가(감소)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XXX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XXX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장기대여금의 회수				
차량운반구의 처분				
보증금의 회수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XXX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차량운반구의 취득				
보증금의 증가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XXX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XXX			
단기차입금의 증가				
사채의 발행				
장기차입금의 증가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XXX			
단기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장기차입금의 상환				
배당금의 지급				
⋮				
IV. 현금의 증가(감소)		XXX		XXX
V. 기초의 현금		XXX		XXX
VI. 기말의 현금		XXX		XXX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VII

결산 실무

01 법인세의 계산

(1) 법인세의 일반 사항

가. 법인세

- 법인세 납세의무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법인세 과세대상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표 7-1>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제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동일

- 법인세 계산 요약

<표 7-2> 법인세 계산

구 분	내 용
당기순손익	•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결산상 당기순손익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	• 결산조정 :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예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정한 대손금 등 • 신고조정 :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 계상 가능 예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
(+) 익금산입 익금의 범위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이자상당액 익금산입

<표 7-2> 법인세 계산

구 분	내 용												
(-) 익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분할차의 등 •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제외 •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90%, 80%)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50%, 30%)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이월결손금 보전에 총당한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 손금산입 손금의 범위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상 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비용 설정 • 대손충당금 :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 × max(1%, 대손실적률)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등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초과액 : 한도액(①+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 0.2%, 0.03%)+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적용률×10% ③ min[기업업무추진비(문화접대비), (①+②)×2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등 												
차가감 소득금액	=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 • 현물기부금 : 법정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max(시가, 장부가액)] • 기부금 한도 초과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정기부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소득금액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정기부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소득금액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지정기부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정·지정기부금 외의 업무무관 무상지출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손금불산입</td> </tr> </tbody> </table> <p>※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20% 한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 : 법정·지정기부금 10년간 이월공제 ※ '19.1.1. 이후 신고분 및 '13.1.1.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대상 	구 분	내 용	한도	법정기부금	국가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기준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기준소득금액 10%	비지정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외의 업무무관 무상지출금액	손금불산입
구 분	내 용	한도											
법정기부금	국가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기준소득금액 50%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기준소득금액 10%											
비지정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외의 업무무관 무상지출금액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표 7-2> 법인세 계산

구 분	내 용										
(-) 이월결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19.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사유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 자산수증익 및 채무편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등 •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은 당해 소득금액의 100%, 그 이외 법인은 60% 										
(-) 비과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 •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등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법인세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margin-righ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2억원이하</th> <th style="text-align: center;">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th> <th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th> <th style="text-align: center;">3,00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body> </table>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등기 10%(주택20%), 미등기 40%)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환류소득(투자금액포함방식, 투자금액제외방식)×20% 	과세표준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세율	10%	20%	22%	26%
과세표준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세율	10%	20%	22%	26%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공제·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적용) •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10%, 20%, 30%), 중기업(5%, 10%, 1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max(당기비용×0~25%, 전년대비 증가 비용×25~50%)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min(성실신고확인 비용×60%, 1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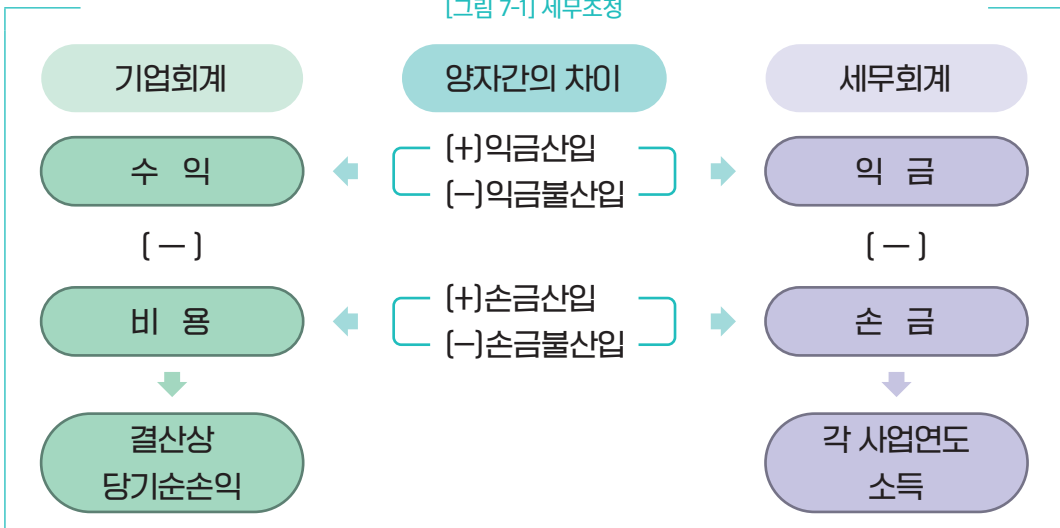
<표 7-2> 법인세 계산

구 분	내 용		
※ 최저한세의 계산	구 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일반기업	100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등 • 법인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주주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 감 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내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등 		
차감납부할 세액	= 가감계 - 기납부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나. 세무조정

- 세무조정의 목적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음

[그림 7-1]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 조정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하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의2①(7)부터 (13)의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
 -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이후 평가분)

-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 생산설비의 폐기손
-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총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제 총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음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법인세법」제60⑤, 제60⑥, 「국세기본법」제47의2①)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법령제97의2①)(단, 조세법제72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제29부터 제31까지, 제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제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다. 과세표준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
 -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라. 신고의 변경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제45조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제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함
 -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제45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 제48조)
 -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 한 경우, 1개월 이내는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음
- 경정청구_국세기본법제45의2
 -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및 제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시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초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2016.1.1.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1. 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적용)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다른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거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0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함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나. 익금

- 익금의 주요내용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 자산의 양도금액
 -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제88①8 각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제28①(4)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등”이라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제2⑤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제2⑤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28①(4)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이자

-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7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기타 특정익금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 »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text{배당의제액} = \text{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text{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사례 7-1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D회사(1주당 취득가액 1만원)의 의제배당액
 - (주)D회사가 취득하는 금전 = 15,000원×50,000주×40%=300,000,000원
 -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 10,000원×50,000주×40%=200,000,000원
 - 의제배당액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원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	(대변)	투자주식 200,000,000 의제배당 100,000,000 → 익금산입
------	----------------------	------	---

- 감자법인의 회계처리(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 시)

(차변)	자본금 500,000,000 감자차손 250,000,000 잉여금 2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750,000,000 감자차손 250,000,000
------	--	------	--

-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i. 이익잉여금
 - ii. 「자산재평가법」제13①(1)(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 적립금
 - iii.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iv.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포함
 - v.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 »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i.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ii.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및 감자차익
 - iii. 합병차익·분할차익(2010.6.30.이전 합병·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iv.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제13①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제외)
 - v.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 »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 »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하거나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등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 » 분할의 경우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다. 손금

- 손금의 주요내용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를 포함]

- 유형자산의 수선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이자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에 따라 대손 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함)
- 자산의 평가차손(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실(2001.12.31. 신설))
-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사업자(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가액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 후생비
 - * 이 경우 직원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함
 -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에서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의 금액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 연간 5만원 이내 금액]
 -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스주매수선택권 혹은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
 -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스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스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 임원·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금, 공동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금품
- 기타 특정손금
-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 책임준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 손실보전준비금(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 »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3.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
 - » 다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2023.12.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 12.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경우

- »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3.12.31.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
-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
-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무상 소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2023.12.31.까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12.31.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202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 » 대학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을 위해 보유하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3년 거치 3년 균등 환입), 대학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
-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모회사의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39①(1)의 비영리법인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 » 2010.6.30. 이전 합병·분할 시에만 해당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 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라.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의 주요내용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 주식할인발행 차금
 -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법인지방 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 » 벌금·과료(통과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가산금과 강제징수비
 -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 연결모법인에 「법인세법」 제76조의19②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①(1)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2/3)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42조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의 상여금, 제44조 규정의 퇴직급여 및 제44조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이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
 -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금액

03 법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가. 과세표준의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	---	-------------------------------	---	------

* ①→②→③ 순서로 공제액 계산

- 이월결손금 범위
 -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
 - 과세표준 계산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총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총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8조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함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2018년 귀속 : 70%, 2019년 귀속 : 60%, 2023년 귀속 : 80%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
 - 결손금소급공제의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총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봄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 합병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 »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소득제외)에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
 -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자산 총액의 70%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이며,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종전 사업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1990.12.31. 이전 발생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 1983.1.1.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전신·전화채권,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하수도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출자로 인해 받는 배당소득
 - »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
 - »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
 - » 벤처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 » 기금운용법인이 창업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 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2)의 비과세소득과 (3)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없는 것으로 계산

나. 납부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

-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text{법인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표 7-3> 법인세율

과세표준	2008.12.26.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9.1.1. 이후	2010.1.1. 이후	2012.1.1. ~ 2017.12.31.	2018.1.1. 이후	2023.1.1. 이후
	2억 이하	11%	11%	10%	10%	10%
2억 초과	25%	22%	22%	20%	20%	19%
200억 초과				22%	22%	21%
3,000억 초과				25%	24%	

- 산출세액 계산 사례

사례 7-2

- 각 사업연도소득 : 118,000,000원
- 비과세 소득 : 8,000,000원
-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1일~12월31일
- 설립등기일 : 2022.7.7.
- 법인세 산출세액계산(2022년)

$$\begin{aligned} \text{① 법인세 과세표준} &= 118,000,000\text{원} - 8,000,000\text{원} = 110,000,000\text{원} \\ \text{② 법인세 산출세액} &= \{(110,000,000\text{원} \times 6/12) \times \text{세율}\} \times 6/12 \\ &= (220,000,000\text{원} \times \text{세율}) \times 6/12 \\ &= (200,000,000\text{원} \times 10\% + 20,000,000\text{원} \times 20\%) \times 6/12 \\ &= 12,000,000\text{원(산출세액)} \end{aligned}$$

0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 관련 규정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지배회사의 범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배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 ②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한편, 연결대상종속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를 통해 종속기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 ①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사업(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 ②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 다만,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2일로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지배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1)~(3)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 또한 해당 경과규정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비외감기업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 앞서 언급한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유예가 되므로 현재는 작성의무가 없음
- 또한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연결대상종속회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가능성이 희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외감대상 종속기업이라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지분법적용의 강제성은 유지되고 있는 바, 지분법 회계처리는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종속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의
 - 종속기업은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종속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 제1조의 3 [지배·종속의 관계]
 -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① 영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 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 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의하는 규정 따라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외감법상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 기술지주회사 매뉴얼 열람결과 기술지주회사 자체가 「외부감사법」에 의한 규모(자산총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며, 기술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종속기업 또한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규모에 미달하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대부분의 기술지주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임

나.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과의 관계

-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
 - 연결재무제표와 지분법은 동일하게 종속기업의 재무적인 성과를 표시하는 방법이며, 그 적용결과는 일정한 조건 내에서는 동일

사례 7-3

- (주)00기술지주회사는 자본금 100,000,000원 중 60,000,000원(60%)를 출자하여 (주)K회사설립
- (주)00기술지주회사의 요약 재무제표(지분법 적용 전)는 다음과 같음

요약 재무제표			
보통예금	290,000,000	미지급금	100,000,000
지분법주식	60,000,000		
		자본금	200,000,000
		이익잉여금	50,000,000
계	350,000,000	계	350,000,000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150,000,000
매출원가	100,000,000
매출총이익	50,000,000
판매비와관리비	40,000,000
사업이익	10,000,000

- (주)K회사는 설립 1년차 요약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음

요약 재무제표			
보통예금	80,000,000	매입채무	10,000,000
매출채권	30,000,000		
재고자산	10,000,000	자본금	100,000,000
		이익잉여금	10,000,000
계	120,000,000	계	120,000,000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80,000,000
매출원가	50,000,000
매출총이익	30,000,000
판매비와관리비	20,000,000
사업이익	10,000,000

1. (주)00기술지주회사 지분법 적용

- 지분법 적용 (차변) 지분법주식 6,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6,000,000(지분법 이익 : 사업이익 10,000,000원 × 지분율 60% = 6,000,000원)

- 지분법적투자액 = 60,000,000원(취득원가) + 6,000,000원(지분법이익) = 66,000,000원

* 지분법 적용 후 (주)00기술지주회사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보통예금	290,000,000	미지급금	100,000,000
지분법주식	66,000,000		
		자본금	200,000,000
		이익잉여금	56,000,000
계	356,000,000	계	356,000,000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156,000,000
매출원가	100,000,000
매출총이익	56,000,000
판매비와관리비	40,000,000
사업이익	16,000,000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 연결분개 수행

① (주)00기술지주회사 지분법주식과 (주)K회사 자본계정의 상계제거(기초시점)

(차변)	자본금 100,000,000	(대변)	지분법주식 60,000,000 비지배지분 40,000,000
------	-----------------	------	--------------------------------------

② 지분법손익의 제거

(차변)	지분법이익 6,000,000	(대변)	지분법주식 6,000,000
------	-----------------	------	-----------------

③ 비지배주주 순이익 대체

(차변)	비지배지분 순이익 4,000,000	(대변)	비지배지분 4,000,000
------	---------------------	------	-----------------

* 연결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주)00기술지주회사	(주)K회사	단순합산	연결분개	연결
보통예금	290,000,000	80,000,000	370,000,000	-	370,000,000
매출채권	-	30,000,000	30,000,000	-	30,000,000
재고자산	-	10,000,000	10,000,000	-	10,000,000
지분법주식	66,000,000	-	66,000,000	(66,000,000)	-
자산총계	356,000,000	120,000,000	476,000,000	(66,000,000)	410,000,000
매입채무	-	10,000,000	10,000,000	-	10,000,000
미지급금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부채총계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	110,000,000
자본금	200,000,000	100,000,000	300,000,000	(100,000,000)	200,000,000
이익잉여금	56,000,000	10,000,000	66,000,000	(10,000,000)	56,000,000
지배지분	256,000,000	110,000,000	366,000,000	(110,000,000)	256,000,000
비지배지분	-	-	-	44,000,000	44,000,000
자본합계	256,000,000	110,000,000	366,000,000	44,000,000	300,000,000
부채+자본	356,000,000	120,000,000	476,000,000	(66,000,000)	410,000,000

* 연결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주)00기술지주회사	(주)K회사	단순합산	연결분개	연결
매출액	156,000,000	80,000,000	236,000,000	(6,000,000)	230,000,000
매출원가	100,000,000	50,000,000	150,000,000	-	150,000,000
매출총이익	56,000,000	30,000,000	86,000,000	(6,000,000)	80,000,000
판관비	40,000,000	20,000,000	60,000,000	-	60,000,000
사업이익	16,000,000	10,000,000	26,000,000	(6,000,000)	20,000,000
비지배지분	-	-	-	(4,000,000)	(4,000,000)
연결당기순이익	16,000,000	10,000,000	26,000,000	(10,000,000)	16,000,000
비지배지분이익	-	-	-	4,000,000	4,000,000
총이익	16,000,000	10,000,000	26,000,000	(6,000,000)	20,000,000

- 상기 사례에서 보면 (주)00기술지주회사의 자본과 지배주주지분의 금액이 일치하고, 이익과 연결당기순이익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분법은 (주)00기술지주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 (주)K회사의 투자성과를 반영하는 방법이고, 연결 재무제표는 (주)00기술지주회사와 (주)K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제3의 재무제표를 표현하는 방법
 - 즉 지분법은 (주)K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1줄로 표시해주는 순액법이라면, 연결재무제표는 (주)K회사의 수익과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표시하는 총액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 형태
-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제품제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의 손익계산서와의 그 형태가 달라야 함
 - 일반기업은 제품 판매, 상품 판매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품매출 및 상품매출 등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타당
 -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이므로, 다른 기업의 소유에 따른 이익이 매출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표 7-4> 일반기업과 지주회사의 손익계산서 비교

일반기업		지주회사	
매출액		사업수익	
제품매출		종속기업투자관련이익	
상품매출		지분법이익	
매출원가		지분법주식처분이익	
제품매출원가		용역수익	
상품매출원가		사업비용	
매출총이익		종속기업투자관련손실	
판매비와관리비		지분법손실	
사업이익		지분법주식처분손실	
사업외수익		용역매출원가	
지분법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지분법주식처분이익		사업이익	
사업외비용		사업외수익	
지분법손실		사업외비용	
지분법주식처분손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05 지분법 회계처리

가. 지분법

● 투자주식의 보유

- 기술지주회사는 특허 등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배기업라고 하며, 지배당하는 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정의

<표 7-5> 투자주식 보유에 따른 회계이슈

회계 이슈	일반기업회계기준
①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제8장 지분법
② 종속기업 자본 변동시점의 회계처리	
③ 결산시점의 회계처리	
④ 처분시점의 회계처리	
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제4장 연결재무제표

- 지분법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점 이후 발생하는 피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평가방법
- 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의 투자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사업(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음
- 투자기업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음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사업(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사업(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술지주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기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

참고: 산학협력단의 지분법 적용

-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에서는 기술지주회사 투자주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도록 규정

제29조(유가증권의 평가) 산학협력단 회계의 단기매매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평가손익은 당기의 운영외손익으로 한다. 단, 장기투자금융자산과 지배권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 출자하는 투자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술지주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술지주회사의 순자산이 취득원가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손상차손 인식이 필요할 경우 손상차손 인식을 통하여 투자주식을 감액하여야 함
 - 또한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순자산금액을 주식에 표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기술지주회사의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

-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법주식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 자회사의 순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해당 순자산의 가치와 취득대가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투자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자회사의 투자주식 취득대가
 → 자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 지분율
 ⇒ 투자차액

- 투자차액이 양(+수인) 경우

- 투자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회사를 신규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 투자차액이 양(+수인) 경우는 자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써, 피투자회사의 초과수익력에 대가인 사업권(영업권)으로 인식
- 사업(영업)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해당 사업(영업)의 상각액은 기술지주회사 개별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법손익에 가감하게 됨

사례 7-4

사업(영업)의 상각

- 2017년 1월 1일에 00기술지주회사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100,000,000원인 XX회사의 주식 60%를 80,000,000원에 취득
- 00기술지주회사와 XX회사간 내부거래는 없으며, XX회사는 2017년 5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00기술지주회사는 사업(영업)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① 투자차액의 산출

취득대가	80,000,000
-) 순자산 공정가치 100 × 60% =	60,000,000
=) 투자차액	20,000,000

② 취득일의 회계처리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0,000,000	(대변)	보통예금 80,000,000
------	----------------------	------	-----------------

③ 결산일의 회계처리

- XX회사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30,000,000
------	----------------------	------	-------------------

* XX회사 당기순이익 50,000,000원 × 60% = 30,000,000원

- 사업(영업) 상각

(차변)	지분법이익** 4,000,0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0,000
------	-------------------	------	---------------------

** 투자차액 20,000,000원 ÷ 5년 = 4,000,000원

2017년말 XX회사 순자산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00기술지주회사의 XX회사 순자산 지분	=	150,000,000 × 60%	=	9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	=	80,000,000 + 30,000,000 - 4,000,000	=	106,000,000
투자차액 잔액	=	20,000,000 - 4,000,000	=	16,000,000
지분법적용 투자주식(106,000,000) - 투자차액 잔액(16,000,000) = 순자산 지분(90,000,000)				

- 투자차액이 음(-)수인 경우

- 투자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회사를 신규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 투자차액이 음(-)수인 경우는 자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적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즉 염가로 매수한 경우이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
-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익은 당기이익으로 인식
- 해당 염가매수차익은 기술지주회사 개별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법손익에 가감하게 됨

사례 7-5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 2017년 1월 1일에 00기술지주회사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100,000,000원인 XX회사의 주식 60%를 40,000,000원에 취득
- 00기술지주회사와 XX회사간 내부거래는 없으며, XX회사는 2017년 5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00기술지주회사는 사업(영업)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① 투자차액의 산출

취득대가	40,000,000
-) 순자산 공정가치 100 × 60% =	60,000,000
=) 투자차액	(-)20,000,000

② 취득일의 회계처리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0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000
------	----------------------	------	-----------------

③ 결산일의 회계처리

- XX회사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30,000,000
------	----------------------	------	-------------------

* XX회사 당기순이익 50,000,000원 × 60% = 30,000,000원

-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20,000,000
------	----------------------	------	------------------

2017년말 XX회사 순자산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00기술지주회사의 XX회사 순자산 지분	=	150,000,000 × 60%	=	9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	=	40,000,000 + 30,000,000 + 20,000,000	=	90,000,000
지분법적용 투자주식(90,000,000) = 순자산 지분(90,000,000)				

- 투자차액이 영(0)인 경우

- 투자차액이 영(0)인 것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만큼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써 통상적으로 신규설립하는 경우이며, 투자차액이 발생하지 않음

사례 7-6

신규설립

- 2017년 1월 1일에 00기술지주회사는 신규로 설립되는 XX회사의 자본금 100,000,000원 중 총 60%의 자본금을 60,000,000원에 인수
- 00기술지주회사와 XX회사가 내부거래는 없으며, XX회사는 2017년 5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00기술지주회사는 사업(영업)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① 투자차액의 산출

취득대가	60,000,000
-) 순자산 공정가치 100 × 60% =	60,000,000
=) 투자차액	0

② 취득일의 회계처리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000,000	(대변)	보통예금 60,000,000
------	----------------------	------	-----------------

③ 결산일의 회계처리

- XX회사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

(차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30,000,000
------	----------------------	------	-------------------

* XX회사 당기순이익 50,000,000원 × 60% = 30,000,000원

2017년말 XX회사 순자산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00기술지주회사의 XX회사 순자산 지분	=	150,000,000 × 60%	=	9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	=	60,000,000 + 30,000,000	=	90,000,000
지분법적용 투자주식(90,000,000) = 순자산 지분(90,000,000)				

● 투자차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자회사를 신규설립한 경우

- 투자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취득일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입수하면 됨

- 기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 실사를 통하여 실사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야 함
- 가능하다면 실사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해당 실사 재무제표를 투자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 활용
- 재무실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결산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투자차액을 산출하는 자료로 활용

● 결산시점의 지분법 적용

- 자회사 지분변동액의 반영

- 자회사 순자산(자산 - 부채)의 변동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

<표 7-6> 자회사 지분변동액의 반영

변동원인	반영방법	비고
당기순손익	당기손익(지분법이익, 지분법손실)	
회계변경	이월이익잉여금(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기타 자본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배당금 지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	배당금 경의 시점
미실현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가감	

i. 당기순손익

- » 자회사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을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며, 해당 변동금액은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

ii. 회계변경

- » 자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고, 회계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회계정책의 누적효과로 하여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직접 반영
- » 당기순손익과 동일하게 이익잉여금의 변동원인이지만 당기순손익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므로,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효과를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인식

iii. 기타자본요소

- » 자회사의 유형자산 재평가, 투자유가증권 평가 등 기타자본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변동금액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직접 인식

iv. 배당금의 지급

- »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술지주회사가 배당금을 수령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 » 자회사가 기술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결의 시점에 다음과 같이 당기이익으로 인식

(차변)	미수배당금	100,000,000	(대변)	배당금수익	100,000,000
------	-------	-------------	------	-------	-------------

- »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바로 차감
- » 배당금의 지급은 투자로 인한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차변)	미수배당금	100,000,0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
------	-------	-------------	------	-----------	-------------

v. 미실현손익

- »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거래로 인한 결과물이 외부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

- 자회사 재무제표의 입수

• 원칙

기술지주회사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

• 결산일이 상이한 경우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반영되어야 함

차이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의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회계정책이 상이한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 자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자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결산기일 내 재무제표 입수 정책 수립 필요

자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장부기장의 외부위탁 등을 사유로 결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기술지주회사는 결산기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결산기일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자회사의 정관에 결산 재무제표를 일정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투자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결산기일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 일부 또는 전부 처분

처분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된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

사례 7-7

- 00기술지주회사는 XX회사 주식전부를 처분하였음
 - XX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 : 300,000,000원
 - XX주식 지분법자본변동 가액 : 50,000,000원
 - XX주식 취득원가 : 150,000,000원
 - Xx주식 처분가액 : 350,000,000원

처분시회계처리

(차변)	미수금 350,000,0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000,000
	지분법자본변동 50,000,000		지분법주식처분이익 100,000,000

- 일부 처분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해당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로 하고 있음

사례 7-8

- OO기술지주회사는 XX회사 주식의 50%를 처분
- 해당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XX회사 지분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 XX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액 : 300,000,000원
 - XX주식 지분법자본변동 가액 : 50,000,000원
 - XX주식 취득원가 : 150,000,000원
 - XX주식 처분가액 : 350,000,000원

처분시회계처리

(차변)	미수금 150,000,0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0,000
	지분법자본변동 25,000,000		지분법주식처분이익 50,000,000
(차변)	투자유가증권 150,000,0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50,000,00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VIII

재무성과지표

0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건전성

가. 운영건전성

● 운영건전성 지표

- 운영건전성 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유보율 등이 있음
- 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 » 기업의 부채는 상환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부채와 1년이 되지 않은 단기부채로 이루어짐
 - » 유동비율은 이러한 단기부채 지급능력을 알아보고자 측정하는 지표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유동부채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반적 표준비율은 약 200%
- 부채비율 : $[\text{타인자본(부채)}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 부채비율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구성 건전성을 볼 수 있음
 - » 기업의 총 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본 구성 중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율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부채비율임
 - » 부채비율은 보통 200%이하가 표준비율로 알려져 있으나 부채비율을 늘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하지만, 도산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 이자보상비율 : $[\text{사업이익} / \text{이자비용}] \times 100$
 - » 기업의 부채 사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자보상비율을 사용
 - » 이자보상비율은 높을수록 부채 상환능력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 유보율 : $[\text{잉여금} / \text{납입자본금}] \times 100$
 - »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설비확장, 재무구조 안정성을 위해 사내유보 비중을 파악하는 지표
 - » 유보율이 높을수록 경기 불황 혹은 사업이익 감소에 대해 기업의 방어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0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수익성

가. 수익성

- 수익성 지표
 - 수익성 비율은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나타내주는 비율로, 손익계산서상 각 항목들을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 수익성 비율을 통하여 수익, 비용, 매출액 사이에 관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 주당순이익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자기자본이익률 : $[\text{순이익}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 순수한 주주자본의 이익률을 파악할 때 자기자본이익률을 사용하며, 주주들이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유심히 보는 지표
 -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수
 - » 주당순이익 역시 기업 재무제표 분석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로 업종, 규모가 다른 회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상대적 비율을 적용해 평가해 볼 수 있음
 - 배당성향 : $[\text{배당금} / \text{당기순이익}] \times 100$
 - »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에서 유보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을 말하며,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
 - »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유보자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미래 성장에 좋은 요소로 평가

0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과성

가. 성과성

- 성과성 지표
 - 성과성 비율 분석은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매출액, 자기자본, 순이익 등으로 파악
 - 매출액증가율 : $[\text{당기매출액증가액} / \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 »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매출액 증가율을 사용
 - 주당순이익증가율 : $[\text{당기순이익증가액} / \text{전기순이익}] \times 100$
 - » 전년 대비 주당순이익증가율을 보이며 성과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IX

부록

0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술지주회사 등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등록된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2. “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12조, 제5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5.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5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지침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② 이 지침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6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복식부기’란 기술지주회사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 ③ ‘발생주의’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위 제1호 내지 4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제8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장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

제1절 재무상태표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기술지주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술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 표시한다.
2. 기술지주회사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회사의 경우 창업투자자산을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하되, 각각 매도가능증권, 조합출자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투자실적자산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지분의 취득.(다만,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투자는 경영지원자산으로 한다.
3.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구분표시한다.
4. '순자산(자본)'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④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급금 및 부가세대급금 등이 포함된다.

③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및 채권을 말하며, 투자자산 중 상장(기업공개)되어 1년 이내 처분할 계획인 자산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제13조(창업투자자산) ① '창업투자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주목적사업인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창업투자자산의 종류에는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조합출자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구분하되,

1.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주식과 투자사채로 나눈다

가. 투자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보통주 또는 우선주 신주를 발행하여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나. 투자사채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고하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말한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기술지주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으로 한다.

3. 조합출자금은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으로 한다.

4. 기타 투자자산은 기술지주회사가 사업목적 투자인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외의 프로젝트투자, 상장주식 투자 및 구주인수 등에 의하여 투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하며,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투자한 회사가 상장됨으로서 상장주식으로 변경된 것은 제외한다. 단, 해당 투자주식(나목은 투자사채)이 추후 증권시장에 상장하더라도 재분류하지 않는다.

제14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목적 이외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운용 및 투자 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한 장기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제15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기술지주회사의 사업을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비품 및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유형자산 중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유형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6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상표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7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제18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9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20조(자본금) ① '자본금'이란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연) 및 기타 주주 등이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자본금과 현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1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하며,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제22조(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자본거래 이외의 평가등으로 발생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손익의 누적금액을 말한다.

제23조(자본조정)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제24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설립 이후 매년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의 누적금액으로 배당가능재원의 기초가 된다.

제25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① 채권 등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②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제27조의1(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측정) ①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단,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③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창업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또한, 창업투자자산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의 변동금액 중 당기순손익의 지분율 상당액을 지분법손익(당기손익)반영하고 기타 자본변동금액의 지분율 상당액은 자본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창업투자자산 중 조합출자금의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제27조의2(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손상차손) ① 단기매매증권 및 창업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제28조(사업권(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①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권(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사업권(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제29조(채권·채무조정) ①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조정될 채권은 제26조 규정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

제30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제2절 손익계산서

제31조(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① 포괄손익계산서는 사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별지2호 서식 참조]

③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2조(포괄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가. 사업수익
- 나. 사업비용
- 다. 사업이익(손실)
- 라. 사업외수익
- 마. 사업외비용
- 바.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손실)
- 사. 법인세비용
- 아. 당기순이익(손실)
- 자. 주당손익

제33조(사업수익) 사업수익은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투자수익, 투자조합수익 및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투자수익은 조합출자금을 제외한 창업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며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배당금, 전환사채처분이익, 전환사채이자, 해외투자수익(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2. 투자조합수익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조합관리보수와 투자조합의 운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조합성과보수,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분배받는 조합출자금처분이익 및 기타조합수익으로 한다.
3. 기타사업수익은 유동자산과 운용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하며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 및 정부지원사업운영에 따른 컨설팅수입 등으로 한다.

제34조(사업비용) 사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사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 및 금융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분한다.

1. 투자 및 금융비용은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처분손실,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처분손실, 조합출자지분처분손실, 출자금손실, 손상차손 및 투자비용, 해외투자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등으로 한다.
2. 조합관리비용은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투자조합비용, 조합출자금처분손실, 기타조합손실 등으로 한다.
3. 일반관리비는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출장비, 수도광역비, 지급입차료, 회의비, 세금과공과, 사무용품비, 전력비 등 계정과목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손익계산서 양식사례에 있는 일반관리비의 항목으로 한다.

제35조(수익인식기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 할 수익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수익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3절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제36조(자본변동표) ① 자본변동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자본을 구성하는 납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본구성요소 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표시한다.

- ② 자본변동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37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 등의 현금흐름을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감,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창업투자자산의 증감에 의한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의 자산부채의 변동에 증가와 감소(처분)로 각각 표시한다.
-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장 주식

제38조(주식사항)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
2.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
3.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
4.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5.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
6.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7. 기술지주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8.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9. 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의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
11. 우발손실과 우발이익의 내용
12. 전기요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13.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14. 배당금의 산정내역
15.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
16. 「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7. 유형자산의 변동내역
18.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19. 포괄손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0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기술지주회사
재무상태표
제X기:XXXX년X월X일현재
제X기:XXXX년X월X일현재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자산					
I.	유동자산		X X X		X X X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3.	단기매매증권				
4.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7.	선급금				
8.	선급비용				
9.	미수법인세환급액				
10.	이연법인세자산				
11.	⋮				
II.	창업투자자산				
(1)	매도가능증권				
1.	투자주식				
2.	투자사채				
3.	기타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	조합출자금				
(4)	기타투자자산				
I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				
(2)	유형자산				
1.	토지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2.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3.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4. :				
(3) 무형자산				
1. 사업권(영업권)				
2. 특허권				
3. 기타의무형자산				
4. :				
(4) 기타비유동자산				
1. 보증금				
2. 이연법인세자산				
3. :				
자산총계		X X X		X X X
부채				
I. 유동부채		X X X		X X X
1. 단기차입금				
2. 미지급금				
3. 선수금				
4. 예수금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7. 선수수익				
8. 유동성장기부채				
9. :				
II. 비유동부채		X X X		X X X
1. 사채				
2. 장기차입금				
3.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미지급금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4. :				
부채총계		X X X		X X X
자본				
I. 자본금		X X X		X X X
1. 보통주자본금				
현금자본금				
현물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II. 자본잉여금		X X X		X X X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기타자본잉여금				
4. ∴				
III. 자본조정		X X X		X X X
1. 자기주식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X X X		X X X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 ∴				
V. 이익잉여금		X X X		X X X
(또는 결손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자본총계		X X X		X X X
부채와자본총계		X X X		X X X

[별지 제2호서식] 손익계산서

기술지주회사 손익계산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I. 사업수익		X X X		X X X
(1) 투자수익				
1. 투자주식처분이익				
2. 투자주식배당금				
3. 전환사채처분이익				
4. 전환사채이자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6. 지분법이익				
7. 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8. 투자사채손상차손환입				
9.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10. :				
(2) 투자조합수익				
1. 조합관리보수				
2. 조합성과보수				
3. 조합분배금				
4. 조합출자금처분이익				
5. 조합지분법이익				
6. 조합출자금손상차손환입				
7. :				
8. 기타조합수익				
(3) 기타의사업수익				
1. 경영자문수수료				
2. 이자수익				
3. 배당금수익				
4.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6. 투자자산처분이익				
7. 대손충당금환입				
8. :				
9. 기타사업수익				
II. 사업비용		X X X		X X X
(1) 투자비용				
1. 투자주식처분손실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2. 전환사채처분손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4. 지분법손실				
5. 프로젝트투자처분손실				
6. 투자주식손상차손				
7. 투자사채손상차손				
8.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9. :				
(2) 투자조합비용				
1. 조합출자금처분손실				
2. 조합지분법손실				
3. 조합출자금손상차손				
4. :				
5. 기타투자조합비용				
(3) 기타의사업비용				
1. 이자비용				
2. 지급수수료				
3.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4.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5. 투자자산처분손실				
6. :				
7. 기타사업비용				
(4) 판매비와관리비				
1. 급여				
2. 퇴직급여				
3. 복리후생비				
4. 대손상각비				
5. 임차료				
6. 기업업무추진비				
7. 감가상각비				
8. 세금과공과				
9. 광고선전비				
10. 연구비				
11. 여비교통비				
12. 통신비				
13. 수도광열비				
14. 수선비				
15. 보험료				
16. 차량유지비				
17. 소모품비				
18. 교육훈련비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19. 도서인쇄비				
20. 회의비				
21. 협회비				
22. :				
23. 잡비				
III. 사업이익 (또는 사업손실)		X X X		X X X
IV. 사업외수익		X X X		X X X
1. 이자수익				
2. 임대료				
3. 외환차익				
4. 외화환산이익				
5. 유형자산처분이익				
6. :				
7. 잡이익				
V. 사업외비용		X X X		X X X
1. 기타의대손상각비				
2. 외환차손				
3. 외화환산손실				
4. 기부금				
5. 유형자산처분손실				
6. :				
7. 잡손실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X X X		X X X
VII. 법인세비용		X X X		X X X
VIII.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X X X		X X X
IX.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		X X X		X X X

[별지 제4호서식] 현금흐름표

기술지주회사
현금흐름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제 X (당) 기		제 X (전) 기	
	금 액		금 액	
I. 사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xxx		xxx
1. 당기순이익 (손 실)	xxx		xxx	
2.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투자주식처분손실				
투자사채처분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지분법손실				
프로젝트투자처분손실				
투자주식손상차손				
투자사채손상차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조합출자금처분손실				
조합지분법손실				
조합출자금손상차손				
운용투자주식처분손실				
운용투자사채처분손실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운용투자지분법손실				
해외유가증권처분손실				
약정투자손실				
운용투자주식손상차손				
운용투자사채손상차손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해외유가증권손상차손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				
3.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xxx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사채처분이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지분법이익				
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투자사채손상차손환입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조합출자금처분이익				
조합지분법이익				
조합출자금손상차손환입				
운용투자주식처분이익				
운용투자사채처분이익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운용투자지분법이익				
해외유가증권처분이익				
운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운용투자사채손상차손환입				
운용투자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해외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				
4. 사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xxx			
미수금의감소(증가)				
미수수익의감소(증가)				
선급금의감소(증가)				
선급비용의감소(증가)				
미수법인세환급액의감소(증가)				
투자주식의 감소				
투자주식의 증가				
투자사채의감소				
투자사채의증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증가				
조합출자금의감소				
조합출자금의증가				
단기매매증권의감소				
단기매매증권의증가				
미지급금의증가(감소)				

선수금의증가(감소)				
예수금의증가(감소)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미지급법인세의증가(감소)				
선수수익의증가(감소)				
이연법인세부채의증가(감소)				
퇴직급의지급				
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가(감소)				
⋮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XXX		XXX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XXX			
단기금융상품의감소				
장기대여금의회수				
차량운반구의처분				
보증금의회수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XXX			
단기금융상품의증가				
차량운반구의취득				
보증금의증가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XXX		XXX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XXX			
단기차입금의증가				
사채의발행				
장기차입금의증가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XXX			
단기차입금의상환				
사채의상환				
장기차입금의상환				
배당금의지급				
⋮				
IV. 현금의증가(감소)		XXX		XXX
V. 기초의현금		XXX		XXX
VI. 기말의현금		XXX		XXX

참고문헌

1.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2021년
2. 교육부·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마련」 정책연구, 2023년
3. 교육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고시 제2021-5호(2021.01.26.)
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 고시 제2017-5호(2017.08.29.)
5.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6.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 기준본
7.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24년 기준본
8.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 길라잡이」, 2023년판
9.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매뉴얼」, 2025년 2월 발간 자료

▶ 법령정보

1.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67호(2022.12.13.)
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2024.01.09.)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0626호(2024.12.31.)
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98호(2024.03.19.)
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제2024-56호(2024.08.28.)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제2024-69호(2024.10.0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안) 해설서

기획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도우동 과장, 곽혜윤 사무관, 이성화 주무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 박한석 실장, 박태식 팀장, 서용태 변리사, 강서영 연구원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사무총장, 김도성 국장, 박송이 차장, 임선영 과장
집필진	이지훈(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승민(ULC Co., Ltd.), 김지윤(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최미현(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박미영(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최정원(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감수	변수진(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연(신우회계법인), 오승준(인성회계법인), 김도성(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박송이(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임선영(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발행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발행일	2025년 6월 26일
가격	비매품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서용태 변리사 (☎ 042-869-6409)
디자인/인쇄	에코디자인 (☎ 044-868-0054)
I S B N	979-11-86956-36-6

- 본 책자의 원문파일(PDF)은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www.uicc.re.kr)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www.kath.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지침 해설서

